

## 영유아보육법령 연혁

### 가. 보육사업의 발전 과정

-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
-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 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
-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 “탁아” 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05.1.30)에 따라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005년 12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실시
- 2006년 11월 1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표준보육과정 마련

- 2007년 7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규정,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 처분 규정
- 2008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행정체재처분효과의 승계 규정 신설 (2008.4.18 시행)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8년 3월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 2008년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급근거 명확화,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 관련 규정 마련, 보육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규정 정비,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시행 근거 마련
- 영유아보육법(2008.12.19)개정에 따른 2009년 3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금융정보에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범위,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2009년 4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
- 2009년 6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절차, 양육수당 대상자 등을 구체화
- 2009년 7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놀이터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 등을 합리화
- 2009년 12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 항목을 표준화, 또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에 3자녀 이상 가구 및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추가,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지자체의 비용예탁 근거 마련,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임원 임기, 임원수 등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도록 규정 신설

- 2010년 7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공립보육시설 위탁시 원칙적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사회복지법령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2011년 1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만2세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변경
- 2011년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시설’, ‘보육시설종사자’, ‘시설장’ 등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 등으로 변경하고 보육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놀이터 설치 관련 2005.1.29 이전 인가어린이집 기준 적용 완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등 규정마련
- 2011년 8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유형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최초위탁 시 공개경쟁방식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및 인증 취소 사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및 재산피해보상까지 확대, 보육정보센터·보수교육·이용권관련 업무 위탁규정 통합 정비
- 2011년 9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무상보육대상자를 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어린이집에서 5세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아로 하고 이중 만5세아 무상보육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변경
- 2011년 12월 영유아보육법을 일부개정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근거 마련,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정비,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바로 운영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보조금 반환하는 규정 등 마련
- 2011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제공 요청,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어린이집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 2011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 인가절차 강화, 산업단지 내 공동어린이집 설치,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 우선제공,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층수 기준 완화,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

- 2012년 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종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범위를 부모협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정보센터·보수교육·보육교사자격검정 등 업무위탁관련 조항 정비
- 2012년 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평가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영유아 생명·신체에 관한 피해보상을 위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어린이집 급식·차량관리 기준 정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 마련
- 2012년 6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우선입소 기준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확대·적용
- 2012년 6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 2012년 8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영유아 2자녀 가구를 포함
- 2013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0~5세 영유아 쏠 계층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나.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시행일	내 용	관련근거	비 고
1962~1981	복지부 주관으로 탁아사업 실시(어린이집 691개소 설치·운영)	아동복지법	
1981. 4. 13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3438호
1982.이후	「어린이집」 691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운영 - 법제정·장학지도 : 교육부 - 시설운영·행정지도 : 내무부 - 보건의료 : 보건사회부	유아교육진흥법	
1987. 12. 4	「직장탁아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1989. 9. 19	탁아사업 실시근거 부활	아동복지법시행령	
1990. 1. 15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공포 (법률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종전 단순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능 확대	영유아보육법	
1991. 8.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정·공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991. 8.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공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991. 8. 26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폐지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 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후

## 1) 영유아보육법령 제정

-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
- 1991. 8.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정
- 1991. 8.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2) 영유아보육법령 변경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97. 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9조제4항</li> <li>•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인가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제로 완화(시행 : '98. 7. 1)</li> </ul>
'97.12.24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아의 무상 보육 실시 근거 마련</li> </ul>
'99.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 휴지·폐지 시 승인제</li> <li>- 제24조 보육료 한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시·군·구에서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제</li> <li>-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li> </ul>
'04.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li> <li>&lt;신설&gt;</li> <li>• 중앙 및 지자체에 보육위원회 설치</li> <li>•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로 유형화</li> <li>&lt;신설&gt;</li> <li>• 국·공립외 보육시설의 설치신고제</li> <li>•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공동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급 가능</li> <li>• 보육교사 2등급체계</li> <li>&lt;신설&gt;</li> <li>&lt;신설&gt;</li> <li>• 보육비용의 보호자 부담 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개정(시행 : '05. 1. 30)</li> <li>•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신설</li> <li>• 보육정책위원회 설치</li> <li>• 법인, 부모협동보육시설 별도 유형화</li> <li>•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 보육계획 수립·시행</li> <li>• 인가제로 환원</li> <li>•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 체결도 가능하도록 추가</li> <li>• 보육교사를 3등급체계로 하고, 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을 교부</li> <li>•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은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li> <li>•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li> <li>• 보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차등보육료 지원제도 실시 법 적용근거 마련</li> <li>•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 규정 마련</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04. 3.11	- 영유아 보육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 여성부로 이관(시행 : '04. 6. 12)
'04.12.31	- '04. 1. 29. 개정 법률상 보건복지부 관련규정을 여성부로 변경 - 도서·벽지 등 보육시설에 시설 설치 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적용	- 일부 개정(시행 : '05. 1. 30) - 농어촌지역 추가
'05.12.29	<신설>  <신설>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임의설치  <신설>  - 보육의 우선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육의 우선 제공  -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 정지 -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 관리 제도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명 의 대여 등의 금지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의무설치 • 취약보육 우선 실시 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의무 설치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 사항 • 보육시설의 예·결산 보고 사항 •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에 관한 사항 •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보육의 우선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 위계층의 자녀 •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의 자녀 등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정지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05.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li> <li>&lt;신설&gt;</li> <li>&lt;신설&gt;</li> <li>-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li> <li>•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li> <li>•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li> <li>•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li> <li>-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li> <li>•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li> </ul>
'07. 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li> <li>&lt;신설&gt;</li> <li>-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li> <li>&lt;신설&gt;</li> <li>-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li> <li>&lt;신설&gt;</li> <li>-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li> <li>-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li> <li>-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li>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li> <li>-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li>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li>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정지처분에 걸음한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조치를 위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li> </ul>
'08. 1.17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정비·조성사업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li> <li>- 국공립보육시설 공개경쟁 예외 허용</li> <li>•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li> <li>•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li> <li>•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li> <li>-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li> <li>•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보육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그와 같음</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08. 2.29	- 영유아 보육사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관장(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시행 : '08. 3. 3)
'08. 12.19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시행 근거마련</li> <li>• 보육시설의 사고 예방과 피해보상 등 안전공제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보육 시설 안전공제회”설립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li> <li>-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 관련 규정 마련</li> <li>•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과 관련된 업무위탁, 지도감독, 시범사업 실시 등 규정 마련</li> <li>- 양육수당 지급근거 명확화</li> <li>•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li> <li>-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규정 정비</li> <li>• 보육비용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재산·소득조사, 금융정보 등의 제공 근거 마련</li> </ul>
<u>'11.6.7</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시설장”</li> <li>- 보육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li> <li>&lt;신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으로 명칭변경</li> <li>- 보육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li> <li>- 놀이터 설치기준 규정 신설</li> <li>• 보육정원 50인 미만시설 제외</li> <li>• 2005년 1월 29일 이전 인가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놀이터 기준 적용배제 하거나 완화하여 변경인가 가능</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 보육자격증 업무위탁, 비용보조, 수수료 직접 사용근거마련
	<신설>	-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보육우선제공 대상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자녀” 신설
	<신설>	- 평가인증 수수료 수납근거 및 동 수수료를 위탁기관에서 평가인증관련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신설>	- 보육료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확인에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제공요청 근거 마련
	- 무상보육 특례에 취학직전 1년 유아와 장애아 포함	- 무상보육특례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추가
	<신설>	-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기한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신설>	- 운영정지 처분에 의해 보호자나 영유아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제54조에 따른 위반행위시 행위자 처벌 및 법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항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p>'11.8.4</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 “법인 어린이집“</p>	<p>-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변경</p> <p>-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사회복지 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p> <p>- 어린이집 방문자가 볼 수 있도록 인가증 게시</p> <p>- 국공립 어린이집 최초위탁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함</p> <p>-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내용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 영유아보육환경, 지역사회협력</li> </ul> <p>- 평가인증 결과 공개·취소 근거 마련</p> <p>-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 범위를 생명·신체상의 피해에서 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 어린이집 공제회에 당연가입</p> <p>-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부모로부터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함</p> <p>-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된 경우 전원조치 등 영유아 권익보호</p> <p>- 시정 또는 변경명령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직원 거짓으로 임면하거나 임면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li> <li>•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li> <li>•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경우</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li> <li>•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않은 경우</li> </ul> - 업무위탁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정보센터, 보육자격검정 및 자격증교부, 보수교육, 평가인증, 이용권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li> </ul>
'11.12.31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 매년 실시 및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근거 마련  - '09.7.3 이전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대비에 이상이 없는 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종전 기준 적용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사전 직무교육·직무교육, 보육교사는 직무교육·승급 교육을 받도록 체계 정비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로 운영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함
'13.1.23	- 취학 직전 1년의 영유아, 장애아 및 다문화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신설>	-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 장애아, 다문화 무상보육은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 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에 실시를 위해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 결정

나)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95. 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2급) 양성교육 기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시간</li> </ul> </li> <li>-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 확대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li> <li>-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시간 이상</li> <li>•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li> <li>• 50% 이상</li> <li>• 보육정보센터 예산지원근거</li> </ul>
'98. 5. 6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보육 실시 대상지역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확대</li> </ul> </li> </ul>
'99. 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 임명의 시·군·구청장 보고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명보고 폐지</li> </ul>
'05.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위원회 위원의 수를 중앙 30인 내외, 지방 20인 내외로 함</li> <li>- 지방보육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의 심의사항은 시행계획 수립 및 기타</li> <li>• 시·군·구의 심의사항은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중앙 20인 이내, 지방 15인 이내로 함</li> <li>-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와 시·군·구의 구별 없음</li> <li>•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li> <li>•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li> <li>•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li> <li>• 보육료에 관한 사항, 시설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li> <li>•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li> </ul> </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을 보육 지도원 자격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자로 함	-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을 보육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후 보육업무 에 2년 이상 종사자로 함
	<신설> - 보육지도원의 자격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 졸업자, 공무원으로 아동복지·사회복지 행정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유치원· 초·중·고교사 자격증 소지자, 사 회복지사 2급 이상자  - 직장보육시설 의무 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사회복 지업무 경력자”로 함  - 시·도지사에게 종사자 교육훈련실 시와 교육훈련시설 위탁 권한을 위임	- 센터장 상근원칙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강화, 보육 교사 1급 자격자,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보육업무 3년 이상 종사자 로 한정  -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확대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자”로 하고, 의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중·고등학교 정교사, 양성교육이수자를 시설장 에서 제외  - 시·도지사에게 보수교육실시, 교육 훈련시설 지정권한을 위임 시·군·구청장에게 시설장 업무정 지, 교사 자격정지권한을 위임하고, 연구기관 등에 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업무
'06. 4.13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임의 설치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의무설치 • 취약보육 우선 실시 시설과 보육 정원이 40인 이상인 시설은 의무 설치
'09. 3.31	<신설>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법 제34조의4에 따른 보육비용지원 신청 시 제출받는 금융정보 등 정 보제공동의서면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규정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li> <li>• 법 제34조의6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li> </ul>
'09. 6.30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li> <li>•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li> <li>-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의 설립절차,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감독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 구체화</li> <li>- 양육수당 지원대상의 소득, 연령기준 구체화</li> </ul>
'09.12.31	-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li> <li>•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 항목 표준화</li> <li>*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 중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시간근로 및 국외근로” 포함, 금융재산 가액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등</li> </ul>
'10. 7. 9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li> </ul>
'11.1.20	- 양육수당 지원대상 만2세	-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변경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1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보육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직전 만5세아</li> </ul> </li> <li>- 무상보육실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보육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세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자녀</li> </ul> </li> <li>- 무상보육실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중 만5세아에 대한 무상 보육실시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부담</li> </ul> </li> </ul>
'11.12.8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금융정보 제공 요청</li> <li>-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할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 연간 총수입을 고려하여 산정된 1일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li> </ul> </li> <li>-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정교사2급을 1급으로 조정, 보육 등 이동복지업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력 제외, 사전 직무교육</li> </ul> </li> <li>-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데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경력은 제외</li> </ul> </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12.2.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li> <li>• 종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li> <li>•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li> <li>•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정원 4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 설치</li> </ul>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협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 설치</li> <li>- 보육정보센터, 보육자격검정 및 자격증교부, 보수교육, 평가인증, 이용권관련 업무 위탁 규정</li> </ul>
'12.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우선입소 기준 적용</li> </ul> <신 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우선입소 기준 적용</li> <li>-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및 구성 비율을 시행령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 공익대표(45% 이상),</li> <li>• 보육전문가(20% 이하)</li> <li>• 관계공무원(15% 이하)</li> <li>• 보육교사 대표, 원장(각 10% 이하)</li> </ul> </li> <li>-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및 명단 공표 세부사항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등을 공표</li> </ul> </li> </ul>

## 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92.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양호실</li> <li>• 목욕실</li> <li>• 화장실</li> </ul> </li> <li>- 종사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사 및 영양사 : 영유아 50인 이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설과 겸용 가능</li> <li>• 샤워 또는 세면설비 요구</li> <li>• 변기 수를 제한하지 않고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함</li> <li>• 100인 이상</li> </ul>
'94.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설치 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10종</li> <li>• 가정보육시설 신고서 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li> </ul> </li> <li>&lt;신설&gt;</li> <li>&lt;신설&gt;</li> <li>-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 민간 - 상시 11인 이상 가정 - 5~10인</li> <li>• 시설면적 : 영유아 1인당 4.29㎡</li> <li>• 보 육 실 : 영유아 1인당 2.64㎡</li> <li>• 사무실·양호실: 영유아 30인 미만 제외</li> </ul> </li> <li>- 종사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장이 보육교사 겸임 : 영유아 30인 미만</li> <li>2. 보육교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공립, 민간, 직장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세 미만 1:7</li> <li>3세 이상 1:15</li> </ul> </li> </ol> </li> </o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종</li> <li>• 가정보육시설 신고서 제1항3호·제5호·제6호</li> <li>-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선정을 지역별 종사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li> <li>- 시·군·구청장에게 종사자 임면보고</li> <li>• 상시 16인 이상</li> <li>• 상시 5~15인</li> <li>• 3.63㎡</li> <li>• 3세 미만 2.64㎡</li> <li>• 3세 이상 1.98㎡</li> <li>• 40인 미만 제외</li> <li>• 40인 미만</li> <li>• 2세 미만 1:5</li> <li>• 3세 이상 1:20</li> <li>• 2세 1:7</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2) 가정보육시설 3세 미만 : 영유아 3인 이상 초과할 때마다 1인 증원 3. 사무원 : 영유아 50인 이상인 경우 4. 취사부 : 영유아 30인 이상인 경우 5. 관리인 : 영유아 50인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5인 이상</li> <li>• 영유아 60인 이상인 경우</li> <li>• 영유아 40인 이상인 경우</li> <li>• 영유아 60인 이상인 경우</li> </ul>
'96.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보육수당 지급기준 : 전액</li> <li>- 비용수납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 단가 범위 안 시·군·구별 고시제</li> </ul> </li> <li>- 보육시설 설치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종</li> </ul> </li> <li>- 입지조건</li> <li>- 규모 : 민간-영유아 상시 16인 이상                              가정-영유아 상시 5인 이상                              15인 이하</li> <li>- 시설종사자 기준</li> </ul>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축탁의사)-영유아 50인 이상</li> <li>• 사무원-영유아 60인 이상</li> <li>• 관리인-영유아 60인 이상</li> <li>• 간호사(간호조무사)-영유아 100인 이상</li> <li>• 영양사(동일 시·군·구 공동 영 양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100인 이상</li> <li>- 시설종사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장 자격 기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li> <li>• 고시제 폐지</li> <li>• 5종(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삭제)</li> <li>- 보육수요 추가, 건축물의 80% 이상 이 지상에 노출된 지하층 설치 허용</li> <li>• 상시 21인 이상</li> <li>•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li> <li>• 취학아동 1:30 장애아동 1:5(10인당 특수교사 1인)</li> <li>• 의사(축탁의사) · 사무원 · 관리 인 · 운전기사 자율화</li> <li>• 간호사(간호조무사) · 영양사-보 육시설의 장 · 보육교사 등이 자격 이 있는 경우 겸직 가능</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p>&lt;신설&gt;</p>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자격 기준</li> </ul>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 교육훈련 시설의 기준</li> <li>- 교육훈련과목</li> <li>- 보육시설의 운영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정교사로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대학 등의 교수가 영유아보육에 관한 연구·보육실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시설장 겸직허용(전임근무 완화)</li> <li>• 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기준에 보육 시설·유치원·사회복지시설에서 4주 이상의 보육실습 추가('98.3.1 부터시행)</li> <li>• 2급에서 1급 승급시-보수교육 의무화</li> <li>- 설립기준 강화</li> <li>• 위탁대상 교육훈련 시설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로 제한('96.3.1)</li> <li>• 교육원 기본 시설에 전용면적 66㎡ 이상의 도서실 및 전용면적 181.5㎡ 이상의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98.2.28까지)</li> <li>• 교육훈련생 100명마다 상근전임교수 1명이상 배치</li> <li>- 영유아보육에 관한 실무관련분야 3과목추가</li> <li>- 보육시설의 입소 순위 중 저소득 다음에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결손 가정의 자녀 신설</li> </ul>
'98.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 이상</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터 설치의무 시설 : 영유아 30인이상</li> <li>- 종사자 기준</li> <li>•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기준</li> </ul> <p>&lt;신설&gt;</p>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3급 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2급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2인 이상</li> <li>• 장애인재활시설의 시설별 종사자 기준</li> <li>• 종교단체의 장이 보육시설의 장 겸임 가능</li> <li>• 외국에서 취득한 시설장 및 보육교사1급 해당자 자격인정(근거 서류 첨부시)</li> <li>• 자격인정 폐지('99.1.1부터 시행)</li> </ul>
'99. 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교육훈련시설의 선정 제한</li> <li>- 수료증교부대장 및 학적부 비치의무</li> <li>- 교육훈련실적 보고의무</li> <li>- 운영세칙- 시·도지사의 승인제</li> <li>- 보육시설장의 종사자 임면 보고 의무</li> <li>- 보육시설의 운영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수납-금융기관 수납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지</li> <li>- 폐지</li> <li>- 폐지</li> <li>- 폐지</li> <li>-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보육시설의 장을 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임직원(시설장 자격이 있는 경우) 겸임 가능</li> <li>• 규정 삭제</li> </ul>
'05.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설치 신고시 설치 신고증을 교부한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li> <li>- 보육수당은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기준</li> </ul>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인가시 설치기준 적합여부, 보육수요를 현지확인후 인가를 결정하고 보육시설 인가증 교부</li> <li>- 보육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육수당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설치기준</li> <li>• 위험시설로부터 50m 떨어져 입지</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면적 : 3.6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li> <li>• 4.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실 면적 : 3세이상(1.98㎡) 3세이하(2.64㎡)</li> <li>• 보육실 1층 설치 원칙 예외로 불가피한 사유로 2층 이상 설치시 안전사고 대비시설 갖추</li> <li>• 장애아전담시설</li> </ul>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터 : 52인 이상 시설</li> </ul> <p>-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과 교사의 겸임가능 : 40인 미만</li> <li>•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 2세 미만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이상 20인당1인 취학아동 30인당1인</li> </ul> <p>(40인당 보육교사1인은 유치원1급 혹은 보육교사1급) 장애아 5인당 1인(10인당 1인은 특수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사 100인당1인(동일 시·군· 구안에서 공동채용가능)</li> <li>• 취사부 40인당1인 (50인 초과시 1인씩 증원)</li> <li>• 시설장, 교사가 영양사, 간호사 겸직가능</li> <li>• 사업주와 시설장 겸직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 2.64㎡</li> <li>• 1층 설치 원칙 예외로 사업장내 직장보육시설설치 건물전체사용(영아반 1층 설치)</li> <li>• 장애아전담시설 시설면적 : 7.83㎡/보육실 면적6.6㎡</li> <li>• 놀이터 : 50인 이상 시설(12개월 미만 영아제외)</li> </ul> <p>-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인 이하</li> </ul> <table border="0" style="margin-left: 20px;"> <tr> <td>0세</td> <td>3인당</td> <td>1인</td> </tr> <tr> <td>1세</td> <td>5인당</td> <td>1인</td> </tr> <tr> <td>2세</td> <td>7인당</td> <td>1인</td> </tr> <tr> <td>3세</td> <td>15인당</td> <td>1인</td> </tr> <tr> <td>4세이상</td> <td>20인당</td> <td>1인</td> </tr> </table> <p>(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자격자) 장애아 3인당 1인(9인당 1인은 특 수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사 100인당1인(동일 시·군 · 구안에서 5개시설이 공동채용 가능)</li> <li>• 취사부 40인당1인 (60인 초과시 1인씩 증원)</li> <li>• 시설장만 겸직가능</li> </ul> <p>&lt;삭제&gt;</p>	0세	3인당	1인	1세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	15인당	1인	4세이상	20인당	1인
0세	3인당	1인															
1세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	15인당	1인															
4세이상	20인당	1인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과의 교과목 총 165과목 중 11과목(보육실습 포함)취득 시 보육교사 1급</li> <li>-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수는 5명 이상 원칙, 교육인원 100명 초과 시 50명마다 2인씩 증원</li> </ul> <p>&lt;신설&gt;</p>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은 어린이집, 놀이방으로 구분</li> </ul>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연합회 4개 분과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은 종사자 임면사항을 14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li> <li>-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총 12과목(보육실습 포함) 취득 시 보육교사 2급</li> <li>- 전임교수 요원수는 교육인원 50명당 1인</li> <li>- 교육훈련시설장의 자격은 학사 이상으로 보육 및 교육경력 10년 이상</li> <li>- 직무교육 40시간, 승급 80시간</li> <li>- 어린이집으로 통일</li> <li>- 보육료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수납</li> <li>- 비용은 계좌, 신용카드로 함</li> <li>- 산재보험, 고용보험의무화</li> <li>- 안전관리, 차량안전관리규정</li> <li>- 국공립 보육시설을 공개경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li> <li>- 표준보육과정 규정</li> <li>-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설치기준과 종사자 배치기준의 종류를 정함</li> <li>- 6개 분과위 (법인, 부모협동 포함)</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05.12.12	<p>&lt;신설&gt; &lt;신설&gt; - 보육실 1층 설치 원칙 구체화</p>	<p>- 보육시설 설치 전 사전상담제 - 보육시설 인가증 게시 의무 -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당해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li> <li>- 제10조 별표 2 취사부 배치기준</li> <li>• 40인 이상 1인, 매60인마다 1인 증원</li> <li>- 보수교육 실시기준</li> <li>•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서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위한 교육</li> <li>- 보육시설의 운영기준</li> <li>• 보육시간 등 (1)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12시간 운영 원칙 (2) 보육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설치</li> <li>• 40인 이상 80인 이하 1인, 매80인마다 1인씩 증원</li> <li>- 보수교육 실시기준</li> <li>•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li> <li>- 보육시설의 운영기준</li> <li>• 보육시간 등 (1)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12시간 운영 원칙</li> </ul> <p>&lt;삭제&gt;</p>
'06. 4.13	<p>- 건강진단 • 연1회</p>	<p>- 건강진단 • 1년에 1회 이상 •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는 건강진단 생략 가능</p>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의 우선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가구의 자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의 우선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li> <li>•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자</li> <li>•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li> </ul> </li> </ul>
'06.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영양·건강·안전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보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과정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보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를 정함</li> <li>•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6개 영역별 보육내용을 정함</li> <li>• 표준보육과정의 운영방법을 정함</li> </ul> </li> </ul>
'09.4.1	<p>&lt;신설&gt;</p>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 양육수당, 무상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서면 등 서류의 종류와 보육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마련</li> </ul> </li> <li>- 확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비용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부 및 지자체의 연간조사 계획수립 의무와 연간조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조사의 기본방향,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li> </ul> </li> </ul>
'09.7.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발급, 사용절차 등 구체화 및 이용권의 전자적 발급·관리</li> </ul> </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p>원칙,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신청에 따른 발급, 이용권 사용 시 보육시설 장의 본인확인 의무 등</li> <li>•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업무 위탁</li> <li>*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관리, 비용처리·정산, 전산시스템 구축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의 설치기준(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터 : 면적(총정원×2.5㎡)</li> <li>• 옥내놀이터는 지하 또는 옥상에 설치 불가</li> <li>• 비상재해대비시설 종류 :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li> </ul> </li> <li>- 기타 제도 개선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의 설치기준(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터 : 면적(동일 시간대 놀이터 이용 아동수×3.5㎡)</li> <li>• 옥내놀이터는 옥상에 설치 가능</li> <li>• 비상재해대비시설 종류 : 비상계단, 대피용 미끄럼대, 스프링클러,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li> <li>•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강화(1층 양방향 출구 설치 의무화)</li> </ul> </li> <li>- 기타 제도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시설 신규·변경 인가 및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시 구비 서류 추가</li> <li>•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배치기준 특례 추가</li> <li>•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시기 명확화, 행정명령 위반 또는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li> </ul> </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09.12.31	<p>&lt;변경&gt;</p> <p>&lt;수정&gt;</p> <p>&lt;신설&gt;</p> <p>&lt;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대상 확대</li> <li>•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 대상에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를 추가</li> <li>-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구체화 및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등 5종 공통서식 활용 근거 마련</li> <li>-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지자체의 비용예탁 근거 마련</li> <li>-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관련 규제완화</li> <li>•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임원 임기, 임원수 등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li> </ul>
'10. 7. 9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보육시설 위탁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li> </ul>
'11.12.8	<p>&lt;신설&gt;</p>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강화</li> <li>• 어린이집 시설에 사용되는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전세권 등 부채비율 50% 이상 시 부채상환 이행계획서 제출</li> <li>-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li> <li>• 보육실 층수 5층까지 완화</li> <li>• 산업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은 산단 내 근로자의 자녀 우선 이용 가능</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자격기준(별표4 제1호)</li> <li>•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12과목 35학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자격기준(별표4 제1호)</li> <li>•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17과목 51학점</li> </ul>
'12.2.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증 취소사유</li> <li>•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ul>
	<p data-bbox="438 936 523 967">&lt;신설&gt;</p> <p data-bbox="438 1234 523 1265">&lt;신설&gt;</p> <p data-bbox="438 1451 523 1482">&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원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증 유효기간</li> <li>•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기 전까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li> <li>- 안전공제회 당연가입</li> <li>•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료 납부</li> <li>- 급식관련 운영기준 반영</li> <li>• 유통기한 준수, 위생관리, 영양사 작성 식단 등</li> <li>- 등퇴원 차량운영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고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위탁체 선정에 위한 위탁기간, 위탁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규정</li> </ul>
'12.6.29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처분 기준</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운영정지 전 보조금 반환명령만 할 수 있는 착오·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 규정</u></li> <li>• <u>최근 3년간 최초 위반으로, 출석 일수가 잘못 보고된 영유아가 1명 (형제·자매인 경우는 1명으로 봄) 이고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u></li> <li>• <u>최근 3년간 최초 위반으로, 출석 일수를 잘못 보고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소액이고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u></li> <li>- <u>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세분화</u></li> <li>* <u>자세한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참고</u></li> </ul>
'12.8.17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변경인가 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설치기준에 재산요건을 신설</u></li> <li>• <u>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 되도록 규정</u></li> <li>- <u>변경인가 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토록 하고, 매매(양도)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정원조정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음</u></li> </ul>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 <u>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u></p> <p>- <u>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u></p>	<p>- <u>보육실습 시 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제한, 지도 교사 1인당 실습생 3명 이내로 제한</u></p> <p>- <u>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休園)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 금지</u></p> <p>- <u>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추가</u></p> <p>- <u>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세분화</u></p> <p>* <u>자세한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고</u></p>

## 2013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제 목	현 행	개 정
<b>I. 어린이집 의 설치</b>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다. 기본원칙 5) 운영체(법인·단체·개인)신청 자격 ○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시설규모 등을 감안, <u>어린이집 운영경험 법인·단체로 제한 가능</u> 라. 세부지침 2) 재위탁 심사 ○ 심사 결정 - 위탁계약은 계약내용에 대한 <u>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증 공제 포함) 가입을 의무화</u>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예	다. 기본원칙 5) 운영체(법인·단체·개인)신청 자격 ○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삭제 라. 세부지침 2) 재위탁 심사 ○ 심사 결정 - <삭 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예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다. 인가 시 유의사항 2)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u>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를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고지함(시행규칙 제5조제1항)</u>	다. 인가 시 유의사항 2)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삭 제>



제 목	현 행	개 정
	<p>-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부담금·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함</p> <p>- <u>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자 명의의 ‘자산 및 부채현황’,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의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에 대해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u></p> <p>* <u>신규 및 변경인가 신청 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 및 유지방법 포함)를 제출함. 따라서 정원 규모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서 및 이에 기초한 보증보험(공제)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u></p> <p>&lt;신 설&gt;</p>	<p>-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부담금·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p> <p>- <u>“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개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u></p> <p>• <u>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u></p> <p>다. 인가 시 유의사항</p> <p>2) <u>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야 고지할 사항</u></p> <p>○ <u>가정·민간어린이집 설치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재산요건 관련</u></p> <p>- <u>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이 되도록 함</u></p> <p>- <u>어린이집 자산 금액(실거래가, 공시자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대비 대표자의 금융기관 부채의 부채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u></p>

제 목	현 행	개 정
	<p>○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u>&lt;신 설&g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금액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li> <li>*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인가 시 소명한 부채 내역이 부정 또는 허위인 경우(변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 시 특기사항에 명시</li> <li>-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13.1.1. 이후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li> </ul> <p>○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에 위치한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보육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li> <li>• 감원 대상은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경우,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li> <li>*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2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간 양도·양수 시,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는 감원 제외</li> <li>•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지사체장이 보육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li> </ul> <p>5) 어린이집 인가신청시 대표자 (설치자)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대표자 상호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의견대립이나 재산권 문제 등 보육환경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내재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대표자는 1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li> <li>○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보장,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원칙의 취지상 어린이집의 토지·건물을 공동소유(부부 포함)한 경우 공동대표 인정</li> </ul>
<p>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p>	<p>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lt;추가&gt;</p>	<p>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 및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p>

제 목	현 행	개 정
<b>II. 어린이집의 운영</b>		
<p>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p>	<p>다.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p> <p>1)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 (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p>- 단,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3년 3월 반편성시에 한하여 <u>상위연령반에 편성 가능(이 경우에 한하여 2013년 상위연령반 편성 유지 가능)</u></p> <p>※ <u>2012년 4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1,2월생의 신규 상위연령반 편성을 금지하고, 기존 상위연령반 편성 이동도 가능한 한 동년도 출생아반에 반편성을 하도록 권고</u></p> <p>3)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p> <p>- 생략</p> <p>※ 생략</p> <p>&lt;신 설&gt;</p>	<p>다.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p> <p>1)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 (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p>- 단,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3년 3월 반편성시 또는 <u>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u></p> <p>※ &lt;삭 제&gt;</p> <p>3)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p> <p>- 생략</p> <p>※ 생략</p> <p>※ <u>'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시설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초과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보육 허용 가능</u></p>

제 목	현 행	개 정
	<p>□ 혼합반 운영</p> <p>※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p> <p>라. 입소순위</p> <p>2)입소자 결정</p> <p>○ <u>차상위계층 및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 관련 영유아가구의 소득수준은 '12년 보육료지원 대상자 결정시 지자체에서 파악한 소득인정액을 활용</u></p> <p>* 소득인정액 확인결과 1~2순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lt;서식 II-13&gt;의 어린이집 입소순위증명서(읍면동사무소)를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p> <p>○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 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p> <p>* 동일 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 입소아동의 형제자매, 대기기간 및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 등 보육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p>	<p>□ 혼합반 운영</p> <p>※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u>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u></p> <p>라. 입소순위</p> <p>2)입소자 결정</p> <p>○ <u>차상위계층 소득수준은 '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을 활용</u></p> <p>* 소득인정액 확인결과 1~2순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lt;서식 II-9&gt;의 어린이집 입소순위증명서(읍면동사무소)를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p> <p>○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 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p> <p>- <u>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 입소아동의 형제자매, 대기기간 및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 등 보육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u></p>

제 목	현 행	개 정
	<p>&lt;신 설&gt;</p> <p>3) 입소 우선순위 준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등 <u>정부지원시설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u></p> <p>※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p> <p>&lt;신 설&gt;</p>	<p>-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가 동일 순위일 경우 다자녀가구 자녀가 <u>우선입소('13.4.1. 입소부터 적용)</u></p> <p>3) 입소 우선순위 준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등 <u>정부지원시설과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u></p> <p>※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p> <p>4) <u>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u>                      ○ <u>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가능한 11~12월중에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반 구성 확정 시기는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권장</u>                      * '14년도 신학기 입소대상자 부터 적용</p>
	<p>마. 보육 운영 시간</p> <p>1)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u>07:3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음</u></p> <p>※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p>	<p>마. 보육 운영 시간</p> <p>1)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u>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u></p>

제 목	현 행	개 정
	<p>○ <u>근로자의 날(5.1)은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u></p> <p>※ <u>휴일 근로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음(청구 비용은 휴일 보육료에 준함)</u></p> <p>&lt;신 설&gt;</p>	<p>*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 제2조에 따름</p> <p>** <u>월요일 : 12시간(07:30~19:30),</u> <u>토요일 : 8시간(07:30~15:30)</u></p> <p>○ <u>어린이집 원장은 3월 반편성 또는 아동의 신규 입소시 보호자에게 연간 주요일정(근로자의 날 운영사항, 담당교사의 하계휴가 예정일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u></p> <p>- <u>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 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u></p> <p>* <u>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u></p> <p>2) <u>보육시간 단축 및 임시휴원</u></p> <p>○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 등을 명할 수 있음</u></p> <p>- <u>이 경우 지역TV, 라디오 등 언론을 통해 조치사항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보호자가 사전에 대비하도록 안내</u></p>

제 목	현 행	개 정
	<p><u>&lt;신 설&gt;</u></p> <p>사. 장부 등의 비치</p> <p>○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lt;서식 II-2&gt;에 의한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법 제29조의2)</p>	<p>○ <u>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u></p> <p>- <u>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u></p> <p>사.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p> <p>○ <u>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됨. 다만,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p> <p>아. 장부 등의 비치</p> <p>○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lt;서식 II-2&gt; 또는 &lt;서식 II-2-1&gt;에 의한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법 제29조의2)</p>



제 목	현 행	개 정
	<p>○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다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이며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④·⑥·⑩·⑪ 및 ⑬ 외의 장부 및 서류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p> <p>①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②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③ 시설 운영일지                  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 포함)                  ⑤ 예산서 및 결산서                  ⑥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⑦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⑧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⑨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⑩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⑪ 생활기록부·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⑫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⑬ 안전점검표                  ⑭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p> <p>○ 단, 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p>	<p>○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다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이며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③·⑤·⑨·⑩ 및 ⑫ 외의 장부 및 서류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p> <p>&lt;삭 제&gt;                  ① &lt;생 략&gt;                  ② &lt;생 략&gt;                  ③ &lt;생 략&gt;                  ④ &lt;생 략&gt;                  ⑤ &lt;생 략&gt;                  ⑥ &lt;생 략&gt;                  &lt;삭 제&gt;                  ⑦ &lt;생 략&gt;                  ⑧ &lt;생 략&gt;                  ⑨ &lt;생 략&gt;                  ⑩ &lt;생 략&gt;                  ⑪ &lt;생 략&gt;                  ⑫ &lt;생 략&gt;</p> <p>○ 단, 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p>

제 목	현 행	개 정												
	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써 장부(⑤, ⑥, ⑦) 비치 를 갈음할 수 있음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써 장부(④, ⑤, ⑥) 비치를 갈음 할 수 있음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p>가. 수입·지출 기본원칙</p> <p>○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u>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u>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p> <p>○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시 <u>수입·지출 항목별 총계금액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전송하거나 별도 입력</u></li> <li>- 기업회계기준이나 자체회계기준을 사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입력(전송)하여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별 <u>총계금액 입력</u>은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행</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재무회계절차총괄표</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45%;">예산편성</th> <th style="width: 50%;">예산집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과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지침 (1개월전)</li> <li>• 예산안 제출 (개시 10일전)</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지출 사무의 관리책임자 선정</li> <li>• 수입금의 수납 (7일 이내)</li> </ul> </td> </tr> </tbody> </table>		예산편성	예산집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지침 (1개월전)</li> <li>• 예산안 제출 (개시 10일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지출 사무의 관리책임자 선정</li> <li>• 수입금의 수납 (7일 이내)</li> </ul>	<p>가. 수입·지출 기본원칙</p> <p>○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u>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u>”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p> <p>○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시 <u>보육통합시스템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u></li> <li>- 기업회계기준이나 자체회계기준을 사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입력(전송)하여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 등 <u>재무회계자료</u>는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행</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재무회계절차총괄표</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45%;">예산편성</th> <th style="width: 50%;">예산집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과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지침 (1개월전)</li> <li>• 예산안 제출 (개시 5일전)</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지출 사무의 관리책임자 선정</li> <li>• &lt;삭 제&gt;</li> </ul> </td> </tr> </tbody> </table>		예산편성	예산집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지침 (1개월전)</li> <li>• 예산안 제출 (개시 5일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지출 사무의 관리책임자 선정</li> <li>• &lt;삭 제&gt;</li> </ul>
	예산편성	예산집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지침 (1개월전)</li> <li>• 예산안 제출 (개시 10일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지출 사무의 관리책임자 선정</li> <li>• 수입금의 수납 (7일 이내)</li> </ul>												
	예산편성	예산집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지침 (1개월전)</li> <li>• 예산안 제출 (개시 5일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지출 사무의 관리책임자 선정</li> <li>• &lt;삭 제&gt;</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3. 보육료 등 결정	<p>가. 시·도지사</p> <p>○ 방과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u>만4세 정부 지원단가의 50%</u>, 정부미지원 시설은 시도별 만4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p>	<p>가. 시·도지사</p> <p>○ 방과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u>월10만원</u>,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별 <u>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u> 범위 내에서 결정</p>
4. 보육료 등 수납	<p>다. 보육료 수납액</p> <p>1) <u>만0~4세 보육료 지원아동</u></p> <p>○ 어린이집은 <u>만0~4세 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차액(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을 부모로부터 수납</u></p> <p>2) <u>만5세아 보육료 지원아동</u></p> <p>○ 어린이집은 <u>만5세아 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차액(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을 부모로부터 수납</u></p> <p>3) <u>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아동</u></p> <p>○ 어린이집은 <u>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부모로부터 수납 없음</u></p> <p>4) <u>다문화보육료 지원아동</u></p> <p>○ 어린이집은 <u>다문화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차액(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을 부모로부터 수납</u></p>	<p>다. 보육료 수납액</p> <p>1) <u>만0~5세 보육료 지원아동</u></p> <p>○ 어린이집은 <u>만0~5세 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차액(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을 부모로부터 수납</u></p> <p>&lt;삭 제&gt;</p> <p>2) <u>장애아보육료 지원아동</u></p> <p>○ 어린이집은 <u>장애아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부모로부터 수납 없음</u></p> <p>3) <u>다문화보육료 지원아동</u></p> <p>○ 어린이집은 <u>다문화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차액(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을 부모로부터 수납</u></p>

제 목	현 행	개 정																																																																																																																																																						
	<p>5) 일반아동</p> <p>○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별로 결정된 보육료를 부모로부터 수납</p> <p><b>예시</b>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수납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여부</th> <th>지원구분</th> <th>지원자격</th> <th>연령</th> <th>정부지원 보육료</th> <th>부모부담 보육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지원 아동</td> <td rowspan="4">만0~4세 보육료</td> <td rowspan="2">(영유아 만0~2세)</td> <td>만0세</td> <td>394,000</td> <td>0</td> </tr> <tr> <td>만1세</td> <td>347,000</td> <td>0</td> </tr> <tr> <td rowspan="2">(영유아 만3~4세)</td> <td>만2세</td> <td>286,000</td> <td>0</td> </tr> <tr> <td>만3세</td> <td>197,000</td> <td>0</td> </tr> <tr> <td rowspan="2">장애아 무상보육료</td> <td rowspan="2">(장애아)</td> <td>구분없음</td> <td>394,000</td> <td>0</td> </tr> <tr> <td>다문화 보육료</td> <td rowspan="4">(다문화)</td> <td>만0세</td> <td>394,000</td> <td>0</td> </tr> <tr> <td>만1세</td> <td>347,000</td> <td>0</td> </tr> <tr> <td>만2세</td> <td>286,000</td> <td>0</td> </tr> <tr> <td>만3세</td> <td>197,000</td> <td>0</td> </tr> <tr> <td rowspan="2">5세누리과정</td> <td rowspan="2">(만5세아)</td> <td>만4세</td> <td>177,000</td> <td>0</td> </tr> <tr> <td>만5세</td> <td>200,000</td> <td>0</td> </tr> <tr> <td rowspan="2">미지원 아동</td> <td rowspan="2">일반아동</td> <td rowspan="2">-</td> <td>만3세</td> <td>0</td> <td>197,000</td> </tr> <tr> <td>만4세</td> <td>0</td> <td>177,000</td> </tr> </tbody> </table> <p><b>예시</b>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액</p> <p>(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여부</th> <th>지원구분</th> <th>지원자격</th> <th>연령</th> <th>정부지원 보육료</th> <th>부모부담 보육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보육료 지원 아동</td> <td rowspan="5">0~4세 보육료</td> <td rowspan="3">(영유아 만0~2세아)</td> <td>만0세</td> <td>394,000</td> <td>0</td> </tr> <tr> <td>만1세</td> <td>347,000</td> <td>0</td> </tr> <tr> <td>만2세</td> <td>286,000</td> <td>0</td> </tr> <tr> <td rowspan="2">(영유아 만3~4세아)</td> <td>만3세</td> <td>197,000</td> <td>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td> </tr> <tr> <td>만4세</td> <td>177,000</td> <td>수납액과의 차액</td> </tr> </tbody> </table>	지원여부	지원구분	지원자격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아동	만0~4세 보육료	(영유아 만0~2세)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영유아 만3~4세)	만2세	286,000	0	만3세	197,000	0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구분없음	394,000	0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197,000	0	5세누리과정	(만5세아)	만4세	177,000	0	만5세	200,000	0	미지원 아동	일반아동	-	만3세	0	197,000	만4세	0	177,000	지원여부	지원구분	지원자격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보육료 지원 아동	0~4세 보육료	(영유아 만0~2세아)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영유아 만3~4세아)	만3세	197,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177,000	수납액과의 차액	<p>&lt;삭 제&gt;</p> <p><b>예시</b> 보육료 수납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지원구분</th> <th>연령</th> <th>정부지원 보육료</th> <th>부모부담 보육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정부 지원 시설</td> <td rowspan="5">만0~5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td> <td>만0세</td> <td>394,000</td> <td>0</td> </tr> <tr> <td>만1세</td> <td>347,000</td> <td>0</td> </tr> <tr> <td>만2세</td> <td>286,000</td> <td>0</td> </tr> <tr> <td>만3세</td> <td>220,000</td> <td>0</td> </tr> <tr> <td>만4세</td> <td>220,000</td> <td>0</td> </tr> <tr> <td rowspan="2">장애아 보육료</td> <td rowspan="2">구분없음</td> <td>만5세</td> <td>220,000</td> <td>0</td> </tr> <tr> <td>구분없음</td> <td>394,000</td> <td>0</td> </tr> <tr> <td rowspan="2">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td> <td rowspan="2">만3~5세</td> <td>만3~5세</td> <td>414,000</td> <td>0</td> </tr> <tr> <td>만3~5세</td> <td>414,000</td> <td>0</td> </tr> <tr> <td rowspan="7">정부 미지원 시설</td> <td rowspan="5">만0~5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td> <td>만0세</td> <td>394,000</td> <td>0</td> </tr> <tr> <td>만1세</td> <td>347,000</td> <td>0</td> </tr> <tr> <td>만2세</td> <td>286,000</td> <td>0</td> </tr> <tr> <td>만3세</td> <td>220,000</td> <td>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td> </tr> <tr> <td>만4세</td> <td>220,000</td> <td></td> </tr> <tr> <td>만5세</td> <td>220,000</td> <td></td> </tr> <tr> <td rowspan="2">장애아 보육료</td> <td rowspan="2">구분없음</td> <td>구분없음</td> <td>394,000</td> <td>0</td> </tr> <tr> <td>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td> <td>만3~5세</td> <td>414,000</td> <td>0</td> </tr> </tbody> </table>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시설	만0~5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220,000	0	만4세	220,000	0	장애아 보육료	구분없음	만5세	220,000	0	구분없음	394,000	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만3~5세	만3~5세	414,000	0	만3~5세	414,000	0	정부 미지원 시설	만0~5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22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220,000		만5세	220,000		장애아 보육료	구분없음	구분없음	394,000	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만3~5세	414,000	0
지원여부	지원구분	지원자격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아동	만0~4세 보육료	(영유아 만0~2세)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영유아 만3~4세)	만2세	286,000	0																																																																																																																																																			
			만3세	197,000	0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구분없음	394,000	0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197,000	0																																																																																																																																																					
	5세누리과정	(만5세아)	만4세	177,000	0																																																																																																																																																			
만5세			200,000	0																																																																																																																																																				
미지원 아동	일반아동	-	만3세	0	197,000																																																																																																																																																			
			만4세	0	177,000																																																																																																																																																			
지원여부	지원구분	지원자격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보육료 지원 아동	0~4세 보육료	(영유아 만0~2세아)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영유아 만3~4세아)	만3세	197,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177,000	수납액과의 차액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시설	만0~5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220,000	0																																																																																																																																																				
		만4세	220,000	0																																																																																																																																																				
	장애아 보육료	구분없음	만5세	220,000	0																																																																																																																																																			
			구분없음	394,000	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만3~5세	만3~5세	414,000	0																																																																																																																																																			
			만3~5세	414,000	0																																																																																																																																																			
	정부 미지원 시설	만0~5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22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220,000																																																																																																																																																					
만5세		220,000																																																																																																																																																						
장애아 보육료		구분없음	구분없음	394,000	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만3~5세	414,000	0																																																																																																																																																			

제 목	현 행	개 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 여부</th> <th>지원구분</th> <th>지원자격</th> <th>연령</th> <th>정부지원 보육료</th> <th>부모부담 보육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보육료 지원 아동</td> <td rowspan="5">장애아 무상보육료</td> <td rowspan="5">(장애아)</td> <td>만12세 이하</td> <td>394,000</td> <td>0</td> </tr> <tr> <td>만10세</td> <td>394,000</td> <td>0</td> </tr> <tr> <td>만1세</td> <td>347,000</td> <td>0</td> </tr> <tr> <td>만2세</td> <td>286,000</td> <td>0</td> </tr> <tr> <td>만3세</td> <td>197,000</td> <td rowspan="2">사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td> </tr> <tr> <td>만4세</td> <td>177,000</td> </tr> <tr> <td>5세누리과정</td> <td>(만5세아)</td> <td>만5세</td> <td>200,000</td> <td></td> </tr> <tr> <td rowspan="2">보육료 미지원 아동</td> <td rowspan="2">일반아동</td> <td rowspan="2">-</td> <td>만3세</td> <td>0</td> <td rowspan="2">사·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 전액</td> </tr> <tr> <td>만4세</td> <td>0</td> </tr> </tbody> </table> <p>※ 정부미지원시설 유아반(만3세이상) 아동은 사·도·지사 수납한도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을 부모가 부담하며,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p>	지원 여부	지원구분	지원자격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보육료 지원 아동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만12세 이하	394,000	0	만1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197,000	사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177,000	5세누리과정	(만5세아)	만5세	200,000		보육료 미지원 아동	일반아동	-	만3세	0	사·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 전액	만4세	0	
지원 여부	지원구분	지원자격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보육료 지원 아동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만12세 이하	394,000	0																																				
			만1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197,000	사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177,000																																							
5세누리과정	(만5세아)	만5세	200,000																																						
보육료 미지원 아동	일반아동	-	만3세	0	사·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 전액																																				
			만4세	0																																					
6.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p>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p> <p>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2항)</p> <p>○ 보험료율</p> <p>-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5.8%</p> <p>※ '10년 대비 '11년 건강보험료율은 5.8%p 증가</p> <p>○ 보험료(사용자부담금)</p> <p>= (보수월액×5.8%×1/2) + (보수월액×5.8%×6.55%×1/2)</p>	<p>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p> <p>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2항)</p> <p>○ 보험료율</p> <p>-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5.89%</p> <p>&lt;삭 제&gt;</p> <p>○ 보험료(사용자부담금)</p> <p>= (보수월액×5.89%×1/2) + (보수월액×5.89%×6.55%×1/2)</p>																																							

제 목	현 행	개 정
	<p>라. 고용보험</p> <p>2) 고용보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부담금(어린이집의 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총액의 1,000분의 8(보험료율) ⇒ ①실업급여(0.45%), ②고용안정사업(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 150인미만 사업장기준)</li> </ul> </li> <li>○ 보육교직원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총액의 1,000분의 4.5 ⇒ 실업급여(0.45%)</li> </ul> </li> </ul>	<p>라. 고용보험</p> <p>2) 고용보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부담금(어린이집의 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총액의 1,000분의 8(보험료율) ⇒ ①실업급여(0.55%), ②고용안정사업(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 150인미만 사업장기준)</li> </ul> </li> <li>○ 보육교직원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총액의 1,000분의 4.5 ⇒ 실업급여(0.55%)</li> </ul> </li> </ul>
<p>7. 보육교직원 보수 기준</p>	<p>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p> <p>2) 적용범위</p> <p>나. 보수의 지급</p> <p>1) 봉급월액(월 지급액)</p> <p>&lt;신 설&gt;</p>	<p>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p> <p>2) 적용범위</p> <p>&lt;일부 내용 삭제 후, '나.'로 이동&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lt;삭제&gt;</li> <li>○ 국고보조어린이집이 아닌..&lt;삭제&gt;</li> </ul> <p>나. 보수의 지급</p> <p>1) 봉급월액(월 지급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 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은 「201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li> </ul> <p>-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p>

제 목	현 행	개 정
	<p>다. 퇴직급여의 지급 및 관리 2) 퇴직금 제도 가) 퇴직적립금의 관리</p>	<p>-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기준 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하며,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시설 부담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와 별도 편성하여야 함)</p> <p>※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균형있게 사용</p> </div> <p>○ 국고보조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원장과 교직원이 협의(근로계약서 체결)하여 보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p> <p>- 다만, 교직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됨</p> <p>※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사용자와 고용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p> <p>다. 퇴직급여의 지급 및 관리 2) 퇴직금 제도 가) 퇴직적립금의 관리</p>

제 목	현 행	개 정
	<p>○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함</p> <p>※ 퇴직적립금은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함</p> <p>&lt;신 설&gt;</p> <p>나) 퇴직금 중간정산</p> <p>(1) 근로자의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p> <p>(2)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p> <p>(3)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p>	<p>○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함</p> <p>※ 퇴직적립금은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함</p> <p>- <u>대표자 또는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아님(단,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은 적립 가능)</u></p> <p>※ <u>따라서 정부인건비지원시설의 경우, 퇴직적립금 지원이 안됨</u></p> <p>나) 퇴직금 중간정산</p> <p>(1) <u>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예외적 허용)</u></p> <p>○ <u>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u></p> <p>○ <u>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u></p> <p>○ <u>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u></p> <p>○ <u>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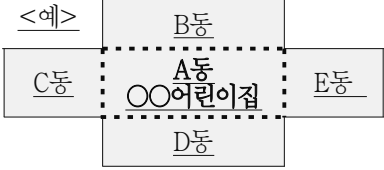


제 목	현 행	개 정
		<p><u>로자가 파산선고(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를 받은 경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 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u></li> <li>○ <u>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u></li> <li>○ <u>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u></li> </ul> <p>(2), (3) 삭제</p>
<p>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 관리</p>	<p>가. 건강관리 <u>&lt;신 설&gt;</u></p>	<p>가. 건강관리 3) <u>건강주치의제도</u> 가) <u>추진목적</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지역사회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질환 조기 발견, 질병 예방교육, 예방접종 및 정기 건강검진 등을 통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u></li> </ul> <p>나) <u>추진방안</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시행 권장 및 주치의제 참여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 시 반영</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사회 등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의, 주치의제에 참여할 의료기관 파악 및 관련정보 제공 등 의료기관-어린이집 간 협약체결 지원 및 독려</u></li> <li>○ <u>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 하고,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주치의) 선정 및 상호협약 체결</u></li> <li>○ <u>의료기관(주치의)에서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유아·교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법 등 관련법령 허용범위내에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등 진료서비스 제공</u></li> </ul>
<p>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p>	<p>나. <u>아동학대의 유형 (생략)</u>            다. <u>아동 학대 신고 (생략)</u>            ○ (생략)            ○ (생략)            라. <u>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26조)</u>            ○ <u>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u>            - <u>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신고 의무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함.</u></p> <p>바. <u>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 사항</u></p>	<p>&lt;삭 제&gt;</p> <p>나. <u>아동학대 신고 (생략)</u>            ○ (생략)            ○ (생략)            ○ <u>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함.</u></p> <p>라. <u>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 사항</u></p>

제 목	현 행	개 정
	<p>○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아동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u>학대 사실을 발견한 달부터</u>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을 <u>3~6개월간 중단</u></p> <p>- <u>학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는</u>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도는 사법기관(경찰, 검사, 법원)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된 경우를 말함</p> <p>사. 성범죄 등 신고 의무</p> <p>○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보호하는 사람이 <u>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u>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p> <p>○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직무상 <u>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u>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3)</p>	<p>○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아동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을 <u>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중단</u></p> <p>- <u>보조금 중단은</u>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도는 사법기관(경찰, 검사, 법원)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된 <u>경우에 적용</u></p> <p>사. 성범죄 등 신고 의무</p> <p>○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보호하는 사람이 <u>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u>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p> <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직무상 <u>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u></p>

제 목	현 행	개 정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3) 적정운영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 -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인증 규모별 상위 5%)  <신 설>	3) 적정운영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 -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인증 규모별 상위 5%) - <u>기획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u> ※ 단, 민원제보·인론보도 등 문제발생시 적용 제외
	라.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2) 시설의 운영정지·폐쇄조치 등 (법 제45조) -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11년 12월 8일 이후 최초로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확정처분일)부터 적용  (세부지침) ①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라.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2) 어린이집의 운영정지·폐쇄조치 등(법 제45조) -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11년 12월 8일 이후 최초로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확정처분일)부터 적용 - <u>확정처분일 기준으로 '11.12.8일 이전 위반행위라도 '11.12.8일 이후 운영 정지를 명하는 경우라면 적용 가능</u>  (세부지침) ①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제 목	현 행	개 정
	<p>○ 인근에 이용가능 어린이집 자체가 없거나 정원 충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p> <p>&lt;예&gt; </p>	<p>○ 예시) 인근에 이용가능 어린이집 자체가 없거나 정원 충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p> <p>&lt;예&gt; (삭제)</p>
	<p>○ <u>장애아와 만0세아(만 12개월 미만의 영아) 현원이 전체 현원의 30% 이상인 어린이집</u></p> <p>○ <u>다만, 처분이 진행 중 (확정처분은 명하지 않은 경우)이며 정원감축, 모집 정지로 사전통지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u></p> <p>② 운영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위생적인 식자재를 재가공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경우 등</li> </ul> <p>4) 벌칙</p> <p>※ <u>하나의 위반행위에 다수의 처분이 가능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한 모든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기존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u></p>	<p>○ 예시) <u>장애아와 만0세아(만 12개월 미만의 영아) 현원이 전체 현원의 30% 이상인 어린이집</u></p> <p>○ &lt;삭 제&gt;</p> <p>② 운영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위생적인 식자재를 재가공하여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급식관리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li> </ul> <p>4)벌칙(법 제54조)</p> <p>※ <u>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부당 수령한 보조금의 환수 외에 인적 제재로서 원장 자격정지, 물적 제재인 운영정지 처분이 병과됨. 다만,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교사대 아동 비율 위반 등)는 보조금 환수 조치만 하거나 원장 자격정지(명의대여, 무자격자 보육 등)만 조치</u></p>

제 목	현 행	개 정						
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신 설>	<p>가. 운영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부모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u></li> </ul> <p>나. 구성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운영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전국 230개 시군구)</u></li> <li>○ <u>(구성) 시·군·구별 10명(부모 및 보육전문가 1:1로 구성)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u></li> <li>- <u>선정기준</u></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930 1093 1027 1128">사업구분</th> <th data-bbox="1027 1093 1321 1128">선정요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30 1128 1027 1630">보육전문가</td> <td data-bbox="1027 1128 1321 1630"> <p>(공통)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공통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정책위원 중 어린이집 근무 경력자</li> <li>- (재)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 중 관찰자 참여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활동 중단 이후 1년 경과된 자</li> <li>- 전·현직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컨설턴트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이 1년이 있는 자</li> </ul> </td> </tr> <tr> <td data-bbox="930 1630 1027 1845">부모</td> <td data-bbox="1027 1630 1321 1845"> <p>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li> <li>-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li> </ul> </td> </tr> </tbody> </table>	사업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p>(공통)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공통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정책위원 중 어린이집 근무 경력자</li> <li>- (재)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 중 관찰자 참여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활동 중단 이후 1년 경과된 자</li> <li>- 전·현직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컨설턴트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이 1년이 있는 자</li> </ul>	부모	<p>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li> <li>-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li> </ul>
사업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p>(공통)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공통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정책위원 중 어린이집 근무 경력자</li> <li>- (재)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 중 관찰자 참여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활동 중단 이후 1년 경과된 자</li> <li>- 전·현직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컨설턴트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이 1년이 있는 자</li> </ul>							
부모	<p>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li> <li>-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table border="1" data-bbox="927 481 1318 835"> <thead> <tr> <th data-bbox="930 486 1023 517">사업구분</th> <th data-bbox="1023 486 1315 517">선정요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30 517 1023 660"></td> <td data-bbox="1023 517 1315 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전현직 보육정보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u></li> <li>- <u>전직 보육정보센터 영양사, 컨설턴트</u></li> </ul> </td> </tr> <tr> <td data-bbox="930 660 1023 831"><u>컨설턴트</u></td> <td data-bbox="1023 660 1315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점수 90점이상인 자(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u></li> </ul>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u></li> <li>- <u>다만,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우선 실시</u></li> <li>○ <u>(모니터링단 활동 기간) : 3~10월(8개월간)</u></li> <li>○ <u>(모니터링 방법) 평소 영유아의 건강·안전 등 보육환경에 대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정보 수집 사례를 관할 지자체에 제공</u></li> <li>- <u>지도·점검 공무원이 어린이집 점검 시 함께 방문하여 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의 지표 모니터링 지원</u></li> <li>- <u>미흡한 부분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u></li> <li>- <u>(부모 역할) 급·간식 위생·안전 및 건강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사후관리 적정 여부 모니터링</u></li> </ul>	사업구분	선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전현직 보육정보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u></li> <li>- <u>전직 보육정보센터 영양사, 컨설턴트</u></li> </ul>	<u>컨설턴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점수 90점이상인 자(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u></li> </ul>
사업구분	선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전현직 보육정보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u></li> <li>- <u>전직 보육정보센터 영양사, 컨설턴트</u></li> </ul>							
<u>컨설턴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점수 90점이상인 자(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모니터링단 교육 등) 시·도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육 및 컨설팅 제공</u></li> <li>○ <u>모니터링 분야: 급·간식, 위생·안전 및 건강관리</u></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lt;주요 모니터링 분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급간식) 식단 및 조리, 식재료 및 영양 관리 등</u></li> <li>· <u>(위생관리) 조리실 청결, 급식 위생 시설·설비 위생 관리 등</u></li> <li>· <u>(안전관리) 차량 안전, 아동학대 예방, 환경 안전 등</u></li> <li>· <u>(건강관리) 예방접종, 응급조치 체계, 건강 검진 등</u></li> </ul> </div>
<b>III. 보육교직원 자격</b>		
<p>1.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p>	<p>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p> <p>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p> <p>&lt;신설&gt;</p>	<p>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p> <p>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u></li> <li>※ <u>‘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한해 근무 가능함</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2.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p>나. 보육교사 자격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자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육교사 1급</td> <td>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td> </tr> </tbody> </table> <p>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발급</p> <p>4)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구비(제출) 서류</p> <p>(나)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제출) 서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종류</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 비(제 출)서 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육교사 3급</td> <td>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수료증 &lt;신설&gt;                      ③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 &lt;서식 III-1&gt; 참조                 </td> </tr> </tbody> </table>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종류	구 비(제 출)서 류	보육교사 3급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수료증 <신설> ③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 <서식 III-1> 참조	<p>나. 보육교사 자격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자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육교사 1급</td> <td>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u>석사학위 이상</u>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td> </tr> </tbody> </table> <p>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발급</p> <p>4)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구비(제출) 서류</p> <p>(나)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제출) 서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종류</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 비(제 출)서 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육교사 3급</td> <td>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수료증 <u>원본</u>                      * 수수료증명서 원본으로 제출 가능                      ③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 &lt;서식 III-1&gt; 참조                 </td> </tr> </tbody> </table>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u>석사학위 이상</u> 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종류	구 비(제 출)서 류	보육교사 3급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수료증 <u>원본</u> * 수수료증명서 원본으로 제출 가능 ③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 <서식 III-1> 참조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종류	구 비(제 출)서 류																
보육교사 3급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수료증 <신설> ③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 <서식 III-1> 참조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u>석사학위 이상</u> 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종류	구 비(제 출)서 류																	
보육교사 3급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수료증 <u>원본</u> * 수수료증명서 원본으로 제출 가능 ③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 <서식 III-1> 참조																	
<p>마.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 실습 기준</p> <p>1)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p> <p>○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p>	<p>마.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 실습 기준</p> <p>1)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p> <p>○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 (<u>보육실습은 현장실습과 이론 수업으로 구성되어야 함</u>),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p>																	

제 목	현 행	개 정
	<p>○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함</p> <p>&lt;신 설&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 실습교과목을 보육실습 I,II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b></p> <p>•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 (전후방학 포함)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각 1회씩 실시</p> </div> <p>2) 보육실습 실시 기준</p> <p>○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어린이집, 종일제유치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습 실시 기준은 다음과 같음</p> <p>(가) 실습기관</p> <p>○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p>	<p>○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B학점)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함</p> <p>※ 2014년부터는 보육실습 교과목이 3학점으로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 실습교과목을 보육실습 I, II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b></p> <p>•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 (직전후방학 포함)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각 1회씩 실시</p> </div> <p>2) 보육실습 실시 기준</p> <p>○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습 실시 기준은 다음과 같음</p> <p>(가) 실습기관</p> <p>○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p>

제 목	현 행	개 정
	<p>(나) 실습기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주, 160시간 이상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속하여(월요일~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li> </ul> </li> </ul> </div> <p>&lt;신 설&gt;</p> <p>(라) 실습지도 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li> </ul> <p>(바) 보육실습확인서 &lt;신설&gt;</p>	<p>(나) 실습기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주, 160시간 이상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속하여(월요일~<u>금요일까지</u>)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u>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u>)이 원칙</li> </ul> </li> </ul> </div> <p>(다) 실습 인정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u></li> <li>※ <u>2013.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 인정시간 준수</u></li> </ul> <p>(마) 실습 지도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u></li> <li>○ <u>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여야 함</u></li> <li>※ <u>2013.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 지도교사 기준 준수</u></li> </ul> <p>(바) 보육실습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2013년 3월 1일 이후 보육실습 이수자 : &lt;서식 Ⅲ-6&gt;</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5.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 기준	<신 설>	<p>※ <u>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배치(2016년 3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u></p> <p>1. 특수교사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li> <li>○ 자격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li> </ul> <p>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li> <li>○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li> <li>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li> </ol> </li> </ul> <p>*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참고</p> <p>3.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li> <li>○ 배치시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 2016년 3월 1일부터</li> <li>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 2017년 3월 1일부터</li> <li>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 2018년 3월 1일부터</li> </ol> </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p>*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의무화 이전에는 보육사업안내의 특수교사 및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 및 장애아 담당교사로 근무가능. 다만, 2016년 3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가 의무화되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이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음</p> <p>○ (경과조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온라인교육 40시간, 온라인 교육 평가, 집합교육 40시간)을 2016.3.1.까지 최종 이수한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p>
<b>IV. 보육교직원 관리</b>		
2. 보육교직원 임면	<p>나. 보육교직원 채용 (나) 보육교사</p> <p>○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p> <p>※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08년 3월 이후부터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가능</p>	<p>나. 보육교직원 채용 (나) 보육교사</p> <p>○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p> <p>※ <u>중전</u>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u>인정하지 않</u>으므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가능</p>

제 목	현 행	개 정
	<p>다.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p> <p>○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p> <p>&lt;신 설&gt;</p>	<p>다.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u>조회 및 관리</u></p> <p>○ <u>채용 시</u>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할경찰서에 요청</p> <p>○ <u>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연2회(상·하반기) 이상 점검·확인 실시</u> 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p> <p>* <u>상반기 점검 실적은 매년 7.10일까지 제출, 하반기 점검실적은 매년 1.10일까지 제출</u></p>
<p>6. 보육교직원 경력 관리</p>	<p>&lt;신 설&gt;</p> <p>다.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작성·보관</p> <p>○ <u>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u></p> <p>라.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령</p>	<p>가. 일반원칙</p> <p>○ <u>시장·군수·구청장은 명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등록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된 경력에 대하여 삭제 조치</u></p> <p>다.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작성·보관</p> <p>&lt;삭 제&gt;</p> <p>라.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령</p>

제 목	현 행	개 정
	2)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 (가) <u>1991. 8. 8 ~ 2001. 3. 31</u> 까지 근무한 경력	2)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 (가) <u>2001. 3. 31</u> 까지 근무한 경력
7.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4) 초임호봉의 획정 <신설>  다.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4) 종일제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범위 가) <u>관련근거(법 제50조)</u>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나)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의 호봉인정 방법 등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4) 초임호봉의 획정 ○ <u>호봉은 동일 직종별(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등)로 획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다.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u>  다.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4) 종일제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u>호봉인정 기준(법 제50조)</u> (가) <u>관련근거(법 제50조)</u>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나) <u>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u> 근무한 보육교사의 호봉인정 방법 등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u>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u> 근무한 경력

제 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li> <li>※ 종일제 유치원 증빙서류에 대한 법적 서식은 없으며, 해당 유치원에 종일반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종일반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 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종일제 유치원 운영 확인 서류 및 공문 등)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li> <li>※ <u>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u> 유치원의 증빙서류에 대한 법적 서식은 없으며, 해당 유치원에 <u>방과후 과정이</u>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u>방과후 과정 운영사항</u>이 기재된 인가 확인 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u>방과후 과정 운영</u> 확인 서류 및 공문 등)면 가능</li> </ul>
<p>10. 보육교직원 자격정지</p>	<p>나.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p> <p>1) 일반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li> <li>○ 위반행위가 <u>2 이상인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u>,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음</li> </ul> <p>&lt;신 설&gt;</p>	<p>나.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p> <p>1) 일반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li> <li>○ 위반행위가 <u>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u>, 이 경우 <u>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u></li> <li>○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p>라. 자격정지 절차도</p> <table border="1" data-bbox="507 528 895 815"> <tr> <td data-bbox="507 528 619 815">자격정지 기간의 결정</td> <td data-bbox="619 528 895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 결정</li> <li>○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가능</li> </ul> </td> </tr> <tr> <td data-bbox="507 837 619 987">사후조치</td> <td data-bbox="619 837 895 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정지 결정사항 공문 통보 (성명,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li> </ul> </td> </tr> </table>	자격정지 기간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 결정</li> <li>○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가능</li> </ul>	사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정지 결정사항 공문 통보 (성명,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li> </ul>	<p>라. 자격정지 절차도</p> <table border="1" data-bbox="927 528 1315 815"> <tr> <td data-bbox="927 528 1038 815">자격정지 기간의 결정</td> <td data-bbox="1038 528 1315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u>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가능</u></li> </ul> </td> </tr> <tr> <td data-bbox="927 837 1038 987">사후조치</td> <td data-bbox="1038 837 1315 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정지 결정사항 공문 통보 (성명, <u>생년월일</u>,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li> </ul> </td> </tr> </table>	자격정지 기간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u>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가능</u></li> </ul>	사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정지 결정사항 공문 통보 (성명, <u>생년월일</u>,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li> </ul>
자격정지 기간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 결정</li> <li>○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가능</li> </ul>									
사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정지 결정사항 공문 통보 (성명,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li> </ul>									
자격정지 기간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u>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가능</u></li> </ul>									
사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정지 결정사항 공문 통보 (성명, <u>생년월일</u>,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li> </ul>									
<p>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p>	<p>다. 자격취소 일반절차</p> <table border="1" data-bbox="507 1077 895 1563"> <tr> <td data-bbox="507 1077 619 1328">자격취소 처분 (시·군·구)</td> <td data-bbox="619 1077 895 1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격취소 여부 심의</li> <li>○ 자격취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내용을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 결정 및 처분</li> </ul> </td> </tr> <tr> <td data-bbox="507 1350 619 1563">자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조치 (시·군·구)</td> <td data-bbox="619 1350 895 15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 사항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 (성명,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li> </ul> </td> </tr> </table>	자격취소 처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격취소 여부 심의</li> <li>○ 자격취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내용을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 결정 및 처분</li> </ul>	자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조치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 사항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 (성명,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li> </ul>	<p>다. 자격취소 일반절차</p> <table border="1" data-bbox="927 1077 1315 1563"> <tr> <td data-bbox="927 1077 1038 1328">자격취소 처분 (시·군·구)</td> <td data-bbox="1038 1077 1315 1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자격취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를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 결정 및 처분</u></li> </ul> </td> </tr> <tr> <td data-bbox="927 1350 1038 1563">자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조치 (시·군·구)</td> <td data-bbox="1038 1350 1315 15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 사항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 (성명, <u>생년월일</u>,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li> </ul> </td> </tr> </table>	자격취소 처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자격취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를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 결정 및 처분</u></li> </ul>	자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조치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 사항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 (성명, <u>생년월일</u>,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li> </ul>
자격취소 처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격취소 여부 심의</li> <li>○ 자격취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내용을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 결정 및 처분</li> </ul>									
자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조치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 사항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 (성명,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li> </ul>									
자격취소 처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자격취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를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 결정 및 처분</u></li> </ul>									
자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조치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 사항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 (성명, <u>생년월일</u>,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li> </ul>									
<p>V.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p>										
<p>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p>	<p>가. 정의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 제22조</p>	<p>가. 정의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u>시행규칙 제20조, 제39조의3</u></p>								

제 목	현 행	개 정
	<p>나. 보수교육 구분</p> <p>1) 보수교육 종류 &lt;신설&gt;</p> <p>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생략) &lt;신 설&gt;</p>	<p>나. 보수교육 구분</p> <p>1) 보수교육 종류 ※ <u>2014.3.1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에 따른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13년 하반기 중 실시 예정</u></p> <p>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생략) ※ <u>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u></p>
<p>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p>	<p>다. 보수교육 평가</p> <p>○ <u>승급교육은 출석시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u></p>	<p>다. 보수교육 평가</p> <p>○ <u>승급교육은 출석시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재시험 불가).</u></p>
<p>5. 보육교사 양성교육시설(보육교사교육원)</p>	<p>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p> <p>(라) <u>등록금 수납 등</u></p> <p>○ <u>등록금은의 상한액은 매년 시·도지사가 정함</u></p> <p>○ <u>등록금은의 상한액은 교육 시간당 1,700원 이상으로 산출하며,</u></p> <p>마) 등록금 환불</p> <p>○ <u>제적, 자퇴, 출석시간 미달자 등에 대한 등록금 환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6조 별표의 기준 준용</u></p>	<p>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p> <p>○ <u>등록금은 매년 시·도지사가 정함</u></p> <p>○ <u>등록금은 교육 시간당 1,700원 이상으로 산출하며,</u></p> <p>마) 등록금 환불</p> <p>○ <u>제적, 자퇴, 출석시간 미달자 등에 대한 등록금 환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6조 별표의 기준 준용</u></p>

제 목	현 행	개 정
	(바) 교육훈련 과목 ○ 보육실습 - 실습기관 : 정원이 15명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u>종일제 유치원 (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u>	(바) 교육훈련 과목 ○ 보육실습 : <u>시행규칙 제12조 제 2항 관련 [별표 4] 기준 준용</u> -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u>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교육청에 방과후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u>
	- 실습 지도교사 : 원장(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실습 지도교사 : <u>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u>
	※ 보육실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되, 현장참관은 부설 어린이집에서 상시 실시	※ 보육실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되, 현장참관은 부설(위탁) 어린이집에서 상시 실시
<b>VI. 어린이집 평가인증</b>		
3. 사업개요	○ 인증지표 : 어린이집 규모·유형별 3종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전담) ○ 인증과정 : <u>4단계(참여신청, 자체 점검, 현장관찰, 심의)</u> ○ 수수료 : 40인 이상(30만원), 39인 이하(25만원), 장애아전담(정원에 따라 40인 이상, 39인 이하 금액을 적용), 확인방문 20만원  <u>&lt;신 설&gt;</u>	○ 인증지표 : 어린이집 규모·유형별 3종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전문) ○ 인증과정 : <u>3단계(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u> ○ 수수료 - <u>신규인증·재인증 참여수수료 100인 이상(45만원), 40인 이상(30만원), 39인 이하(25만원)</u>  ※ 장애아전담의 경우 정원에 따라 수수료 금액 적용

제 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신규인증 재참여 수수료 100인 이상(23만원), 40인 이상(15만원), 39인 이하(13만원)</u></li> <li>- <u>확인방문 수수료 20만원~60만원(어린이집 규모 또는 확인방문 사유별 구분 적용)</u></li> </ul>
<p>4. 인증운영 체계 및 인증 과정</p>	<p>&lt; 전문개정 &gt;  <b>※ 나열 순서 및 서술방식 등 변경 부분은 생략하고, 내용 변경 사항 위주만 발췌하여 정리</b></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border: 1px solid #ccc; margin-bottom: 10px;"> <b>신청단계</b> </div> <p>나. 신청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 연초 접수 개시일로부터 <u>상시 가능</u></li> <li>○ 진행 : 기수별 모집(2013년 신규 인증 17기, 재인증 171기)</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border: 1px solid #ccc; margin-bottom: 10px;"> <b>1단계 : 참여확정</b> </div> <p>가. <u>참여확정 자격(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증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이 종료된 어린이집, 동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에 한함</li> <li>※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로 함</li> <li>※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p>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p> <p>○ <u>지자체의 기본사항확인 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u></p> <p>※ <u>필수항목 : 총정원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건강 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u></p> <p>○ <u>자체점검을 완료한 이후 자체 점검보고서 작성·제출한 어린이집</u></p> <p>○ <u>신청 어린이집 중 상기 기본사항 확인 결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수별 모집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하면 참여대상으로 확정</u></p> <p>※ <u>상기 1단계 “가. 참여확정 자격”에서 정한 요건(처분 종료,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 모두 준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충족 시 요건 미충족</u></p> <p>나. <u>진행일정</u></p> <p>○ <u>신규인증 및 재인증</u></p> <p>- <u>2013년도 신규인증 9기, 재인증 11기로 구분하여 모집, 진행</u></p>

제 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2013년도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신청을 마친 어린이집은 신청 기수의 참여확정일이 도래하면 아래 절차와 같이 기본사항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u></li> <li>- <u>시군구는 기수별 참여확정일이 도래하면 해당 기수에 신청한 어린이집의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내에 시도 및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하고 필수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u></li> </ul> <p>※ <u>자체점검 시행 및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방법, 기본사항확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u></p> <p>&lt;2013년도 평가인증 신규 및 재인증 진행일정&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수</th> <th>신청</th> <th>참여확정</th> <th>현장</th> <th>심의</th> <th>결과</th> </tr> <tr> <th>신규인증</th> <th>재인증</th> <th>단계</th> <th>관찰</th> <th></th> <th>발표</th> </tr> </thead> <tbody> <tr><td></td><td>1기</td><td>~2월</td><td>2월~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r> <tr><td>1기</td><td>2기</td><td>~3월</td><td>3월~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r> <tr><td>2기</td><td>3기</td><td>~3월</td><td>4월~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r> <tr><td>3기</td><td>4기</td><td>~4월</td><td>5월~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r> <tr><td>4기</td><td>5기</td><td>~5월</td><td>6월~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r> <tr><td>5기</td><td>6기</td><td>~6월</td><td>7월~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r> <tr><td>6기</td><td>7기</td><td>~7월</td><td>8월~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 <tr><td>7기</td><td>8기</td><td>~8월</td><td>9월~10월</td><td>11월</td><td>12월</td><td>'14. 1월</td></tr> <tr><td>8기</td><td>9기</td><td>~9월</td><td>10월~11월</td><td>12월</td><td>'14. 1월</td><td>'14. 2월</td></tr> <tr><td>9기</td><td>10기</td><td>~10월</td><td>11월~12월</td><td>'14. 1월</td><td>'14. 2월</td><td>'14. 3월</td></tr> <tr><td></td><td>11기</td><td>~11월</td><td>12월~'14.1월</td><td>'14. 2월</td><td>'14. 3월</td><td>'14. 4월</td></tr> </tbody> </table> <p>※ <u>기수별 세부일정 및 재인증 기수별 참여대상 어린이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u></p>	기수	신청	참여확정	현장	심의	결과	신규인증	재인증	단계	관찰		발표		1기	~2월	2월~3월	4월	5월	6월	1기	2기	~3월	3월~4월	5월	6월	7월	2기	3기	~3월	4월~5월	6월	7월	8월	3기	4기	~4월	5월~6월	7월	8월	9월	4기	5기	~5월	6월~7월	8월	9월	10월	5기	6기	~6월	7월~8월	9월	10월	11월	6기	7기	~7월	8월~9월	10월	11월	12월	7기	8기	~8월	9월~10월	11월	12월	'14. 1월	8기	9기	~9월	10월~11월	12월	'14. 1월	'14. 2월	9기	10기	~10월	11월~12월	'14. 1월	'14. 2월	'14. 3월		11기	~11월	12월~'14.1월	'14. 2월	'14. 3월	'14. 4월
기수	신청	참여확정	현장	심의	결과																																																																																						
신규인증	재인증	단계	관찰		발표																																																																																						
	1기	~2월	2월~3월	4월	5월	6월																																																																																					
1기	2기	~3월	3월~4월	5월	6월	7월																																																																																					
2기	3기	~3월	4월~5월	6월	7월	8월																																																																																					
3기	4기	~4월	5월~6월	7월	8월	9월																																																																																					
4기	5기	~5월	6월~7월	8월	9월	10월																																																																																					
5기	6기	~6월	7월~8월	9월	10월	11월																																																																																					
6기	7기	~7월	8월~9월	10월	11월	12월																																																																																					
7기	8기	~8월	9월~10월	11월	12월	'14. 1월																																																																																					
8기	9기	~9월	10월~11월	12월	'14. 1월	'14. 2월																																																																																					
9기	10기	~10월	11월~12월	'14. 1월	'14. 2월	'14. 3월																																																																																					
	11기	~11월	12월~'14.1월	'14. 2월	'14. 3월	'14. 4월																																																																																					

제 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은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 기수별 모집정원 범위 내에서 필수항목을 준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안내</u></li> <li>- <u>어린이집이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평가인증 참여대상 어린이집으로 확정</u></li> </ul>					
		<p>다. 참여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li> <li>- <u>참여수수료 : 100인 이상(45만원), 40인 이상(30만원), 39인 이하(25만원)</u></li> <li>※ <u>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에 따라 수수료 금액 적용</u></li> <li>○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음</li> </ul> </li> </ul> <table border="1" data-bbox="930 1630 1313 172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font-size: small;">참여확정 마감일까지</th> <th style="font-size: small;">현장관찰자 파견 전</th> <th style="font-size: small;">현장관찰자 파견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90%</td> <td>50%</td> <td>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참여신청 포기 및 환불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u></li> </ul>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파견 전	현장관찰자 파견 이후	90%	50%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파견 전	현장관찰자 파견 이후					
90%	50%	0%					

제 목	현 행	개 정
		<p><b>2단계 : 현장관찰</b></p> <p>가. 현장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관찰자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관찰자의 거주지와 어린이집 소재지를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파견</li> <li>-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파견되며 관찰은 1일간 실시</li> <li>-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사전에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2주간의 관찰주관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없이 어린이집에 파견</li> </ul> </li> <li>※ 다만,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 증참여 어린이집별로 조정 가능</li> </ul>
	<p>라. 부적절사례 확인 지자체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부터 통보받은 현장관찰 당일 발견된 어린이집의 부적절사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u>서면통보</u></li> <li>○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 <u>서면통보</u></li> </ul>	<p>만. 부적절사례 확인 지자체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부터 통보받은 현장관찰 당일 발견된 어린이집의 부적절사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u>통보</u></li> <li>○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 <u>통보</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p>○ 인증결과는 <u>인증과 인증유보</u>로 구분</p> <p><u>인증</u> : 총점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p> <p><u>인증유보</u> :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인증결과</th> <th>총 점</th> <th>영역별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 증</td> <td>기준점수 이상</td> <td>기준점수 이상</td> </tr> <tr> <td>기준점수 미달</td> <td>기준점수 미달</td> </tr> <tr> <td rowspan="2">인증유보</td> <td>기준점수 이상</td> <td>기준점수 미달</td> </tr> <tr> <td>기준점수 미달</td> <td>기준점수 이상</td> </tr> <tr> <td></td> <td>기준점수 미달</td> <td>기준점수 미달</td> </tr> </tbody> </table> <p>&lt;신 설&gt;</p>	인증결과	총 점	영역별 점수	인 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인증유보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p>○ 인증결과는 <u>인증, 인증유보 및 불인증</u>으로 구분</p> <p>- <u>총점 및 6 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u> ⇒ <u>인증</u></p> <p>- <u>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u> ⇒ <u>인증유보(신규인증) 또는 불인증(재인증)</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인증결과</th> <th>총 점</th> <th>영역별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 증</td> <td>기준점수 이상</td> <td>기준점수 이상</td> </tr> <tr> <td>기준점수 미달</td> <td>기준점수 미달</td> </tr> <tr> <td rowspan="2">인증유보 (신규인증)</td> <td>기준점수 이상</td> <td>기준점수 미달</td> </tr> <tr> <td>기준점수 미달</td> <td>기준점수 이상</td> </tr> <tr> <td rowspan="2">불인증 (재인증)</td> <td>기준점수 미달</td> <td>기준점수 미달</td> </tr> <tr> <td></td> <td></td> </tr> </tbody> </table> <p>○ <u>신규인증 참여 어린이집 중 인증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가능</u></p>	인증결과	총 점	영역별 점수	인 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인증유보 (신규인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이상	불인증 (재인증)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인증결과	총 점	영역별 점수																																		
인 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인증유보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인증결과	총 점	영역별 점수																																		
인 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인증유보 (신규인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이상																																		
불인증 (재인증)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p><u>바. 인증유효기간</u></p> <p>○ <u>신규인증, 재인증</u></p> <p>- <u>인증이 결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단, 재인증 사전신청제도를 통해 정해진 신청일정을 변경하여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변경 전 참여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u></p> <p>○ <u>재인증 재참여</u></p> <p>- <u>인증이 결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2년 8개월간 유효함</u></p>	<p><u>사. 인증유효기간</u></p> <p>○ <u>신규인증, 재인증</u></p> <p>- <u>인증이 결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단,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재인증 사전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일정을 변경하여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변경 전 참여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u></p> <p>&lt;삭 제&gt;</p>																																		
	<p><u>아. 평가인증 과정 중 참여가 취소되는 경우</u></p>	<p><u>자. 평가인증 과정 중 참여가 취소되는 경우</u></p>																																		

제 목	현 행	개 정
	<p>① <u>신청마감일</u> 이후 참여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기본사항 확인 시 필수항목이 미 준수된 경우</u></li> <li>-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을 받은 경우</li> </ul> <p>※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p> <p>&lt;중 략&gt;</p> <p>② <u>자체점검 시작일</u> 이후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li> <li>- 정원이 변경(40인이상 ↔ 39인 이하 등)되어 다른 지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li> </ul> <p>&lt;중 략&gt;</p> <p>③ 평가인증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p> <p>&lt;중 략&gt;</p> <p><u>&lt;①항에서 이동&gt;</u></p>	<p>① <u>참여확정 마감일</u> 이후 참여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p> <p><u>&lt;③항으로 이동&g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을 받은 경우</li> </ul> <p>※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p> <p>&lt;좌 동&gt;</p> <p>② <u>참여확정 마감일</u> 이후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li> <li>- 정원 또는 유형이 변경(40인이상 ↔ 39인 이하, 40인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되어 다른 지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li> </ul> <p>&lt;좌 동&gt;</p> <p>③ 평가인증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p> <p>&lt;좌 동&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p>자. 참여취소 지자체 업무</p> <p>① 시·군·구는 참여취소 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u>서면</u> 통보</p> <p>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참여취소 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u>서면</u> 통보</p>	<p>차. 참여취소 지자체 업무</p> <p>① 시·군·구는 참여취소 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u>통보</u></p> <p>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참여취소 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u>통보</u></p>						
<p>5. 재참여 관리</p>	<p>○ <u>신규인증, 재인증 과정 참여 어린이집 중 인증심의 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가능</u></p> <p>※ <u>재인증 재참여의 경우, 재참여 과정 진행 중에는 인증이 유효함</u></p> <p>&lt; 신 설 &gt;</p> <p>○ <u>재점검, 재관찰 및 재심의 과정은 일반참여 시와 동일하나,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된 어린이집은 미달된 영역에</u></p>	<p>○ <u>신규인증 참여 어린이집 중 인증 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가능</u></p> <p>&lt; 삭 제 &gt;</p> <p>○ <u>재참여 신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 시스템을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 신청 및 재참여수수료 납부</li> <li>- 재참여 수수료 : 100인 이상(23만원), 40인 이상(15만원), 39인 이하(13만원)</li> <li>- 환불 : 재참여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li> </ul> <table border="1" data-bbox="932 1541 1321 1644"> <thead> <tr> <th>재참여신청 마감일까지</th> <th>현장관찰자 (재관찰) 파견 전</th> <th>현장관찰자 (재관찰) 파견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100%</td> <td>50%</td> <td>0%</td> </tr> </tbody> </table> <p>○ <u>재관찰/재심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된 어린이집은 미달된 영역에 대하여, 총점의 기준점수가 미</u></li> </ul>	재참여신청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재관찰) 파견 전	현장관찰자 (재관찰) 파견 이후	100%	50%	0%
재참여신청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재관찰) 파견 전	현장관찰자 (재관찰) 파견 이후						
100%	50%	0%						

제 목	현 행	개 정
	<p>대하여, 총점의 기준점수가 미달된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재참여 시 지자체 기본사항 확인은 필수항목에 한하여 실시</li> <li>-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를 재 확인</li> </ul> <p>다. 확인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 예정</li> <li>○ <b>(확인내용)</b> 필수항목(3항목), 보육환경(7항목), 운영관리(2항목), 보육과정(2항목), 건강과 영양(12항목), 안전(10항목)</li> <li>○ <b>(결과반영)</b> 확인 결과 점수가 낮은 경우 보육 컨설팅 연계 또는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li> </ul> <p>&lt;신 설&gt;</p> <p>※ '12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인점검 운영모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인증 취소와 연계할 수 있음</p>	<p>달된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기본사항 및 우수사례·부적절사례를 재확인</li> </ul> <p>다. 확인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li> <li>○ <b>(확인내용)</b>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5항목), 운영형태별 평가인증 지표 전 영역</li> <li>○ <b>(결과반영)</b> 확인 결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보육 컨설팅 연계 또는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li> </ul> <p>※ 일정 기준은 최근 연도 인증 어린이집의 점수대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음</p> <p>&lt;삭 제&gt;</p>

제 목	현 행	개 정
	<p><u>&lt;신 설&g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8점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연장</u></li> <li>- <u>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5점 이상에서 98점 미만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연장</u></li> <li>- <u>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일 경우 보육 컨설팅을 제공하여 품질관리 지원(80점 이상일 경우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함)</u></li> <li>- <u>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보육 컨설팅을 제공한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재확인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u></li> <li>※ <u>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이 될 때까지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재확인점검 대상이 될 때마다 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p>○ <u>확인점검 결과 통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확인점검 실시 이후 점검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지자체로 통보</u></li> <li>- <u>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u></li> </ul>
	<p>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① ~ ② (생략)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lt;중략&gt;</p> <p>※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인증 유지 가능</p> <p>④~⑥ (생략)                      ⑦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u>“바.확인방문의 실시”</u>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lt;중략&gt;</p>	<p>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① ~ ② (생략)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lt;중략&gt;</p> <p>※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인증 유지 가능</p> <p>④~⑥ (생략)                      ⑦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u>확인방문 실시</u>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lt;중략&gt;</p>

제 목	현 행	개 정
	<p>- 운영형태 변경 (지표의 유형이 40인이상↔39인 이하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p> <p>마.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p> <p>① 시·군·구는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사전 서면통지 하고 7일 이내에 인증취소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통보</p> <p>② 해당 어린이집은 이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해당 시·군·구에 제출</p> <p>- 단, 인증취소 요건 ①, ④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경우에만 의견서 제출 가능하며, ③호의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의견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인증취소 시에는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 생략</p> <p>-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이 인증취소 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p> <p>③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서면통보</p> <p>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p>	<p>- 운영형태 변경(40인이상 ↔ 39인 이하, 40인이상·39인 이하↔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p> <p>마.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p> <p>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인증취소사유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p> <p>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취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p> <p>③ 보건복지부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p> <p>-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p> <p>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 취소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p>

제 목	현 행	개 정
	<p><u>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 취소 사항을 확인하고, 7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 취소 확정 및 조치</u></p> <p>※ <u>인증취소일자는 인증취소사유 발생 시점을 적용함 (2011. 1. 1일부터 적용하며, 2010. 12. 31이전 인증취소 사유 발생어린이집 중 2010. 12. 31 까지 미처리된 어린이집은 인증취소 일자를 2011. 1. 1로 일괄처리)</u></p> <p>⑤ <u>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으로 인증취소 확정 통보</u></p> <p>⑥ <u>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회수·폐기</u></p>	<p>- <u>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에 인증취소 확정사실 안내 및 현판 회수 등 협조 요청</u></p> <p>※ <u>인증취소일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서 인증취소 처분일과 구분되며 인증취소사유 발생시점을 적용함</u></p> <p>⑤ <u>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회수·폐기</u></p>
	<p>바. <u>확인방문의 실시</u></p> <p>○ <u>확인방문의 신청</u></p> <p>- <u>구비서류 : 확인방문신청서, 변경인가증(앞뒷면)을 FAX로 제출</u></p> <p>* <u>대표자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관계를 확인가능한 서류(변경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도 함께 제출</u></p> <p>&lt; 신 설 &gt;</p>	<p>바. <u>확인방문</u></p> <p>○ <u>확인방문의 신청</u></p> <p>&lt; 삭 제 &gt;</p> <p>- <u>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확인방문신청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및 수수료 납부</u></p> <p>- <u>증빙서류 : 변경인가증(앞뒷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 관계 확인 문서*</u></p>



제 목	현 행	개 정
	<p>&lt;중 략&gt;</p> <p>○ 확인방문 수수료</p> <p>- 확인방문자 파견인원에 따라 1인/20만원, 2인/40만원</p> <p>&lt;중 략&gt;</p> <p>- <u>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은 「확인방문 자체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보육진흥원으로 FAX 제출</u></p> <p>- <u>확인방문자 파견 이전 자체포기는 확인방문 전일(영업일 기준) 오후 5시(17시)까지 어린이집이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u></p> <p>○ 확인방문 실시</p> <p>- <u>대표자 변경 전·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경우</u></p> <p>· 확인방문자 2명이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p> <p>( 생 략 )</p>	<p>※ <u>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관계를 확인 가능한 서류(변경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도 함께 제출</u></p> <p>&lt;중 략&gt;</p> <p>○ 확인방문 수수료</p> <p>- 확인방문자 파견인원에 따라 1인/20만원, 2인/40만원, 3인/60만원</p> <p>&lt;좌 동&gt;</p> <p>※ <u>확인방문 신청 포기 및 환불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u></p> <p>○ 확인방문 실시</p> <p>- <u>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u></p> <p>· <u>확인방문자 2인(99인 이하어린이집) 또는 확인방문자 3인(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u></p> <p>( 좌 동 )</p>

제 목	현 행	개 정																														
	<p>가. 필수항목 : 4항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항 목</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평정</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평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 총 정원 준수                      -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내용 생략)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 처분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준수</td> <td>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사항이 신청마감일 후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행정 처분 종료, 보조금 반환명령 이행완료 (참여자격 참조)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 준수</td> <td>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사항이 신청 마감일 후 발생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조금반환명령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참여자격 참조)                 </td> </tr> </tbody> </table> <p>&lt; 신 설 &gt;</p>	항 목	평정	평정기준	- 총 정원 준수 -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내용 생략)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 처분 등	준수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사항이 신청마감일 후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행정 처분 종료, 보조금 반환명령 이행완료 (참여자격 참조)		미 준수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사항이 신청 마감일 후 발생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조금반환명령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참여자격 참조)	<p>가. 필수항목 : 9항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항 목</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평정</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평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 총 정원 준수                      -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좌동)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 처분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준수</td> <td>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 준수</td> <td>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집의 설치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준수</td> <td>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 준수</td> <td>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td> </tr> </tbody> </table>	항 목	평정	평정기준	- 총 정원 준수 -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좌동)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 처분 등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미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항 목	평정	평정기준																														
- 총 정원 준수 -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내용 생략)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 처분 등	준수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사항이 신청마감일 후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행정 처분 종료, 보조금 반환명령 이행완료 (참여자격 참조)																														
	미 준수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사항이 신청 마감일 후 발생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조금반환명령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참여자격 참조)																														
항 목	평정	평정기준																														
- 총 정원 준수 -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좌동)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 처분 등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미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제 목	현 행	개 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930 488 1005 521">항 목</th> <th data-bbox="1023 488 1070 521">평정</th> <th data-bbox="1070 488 1318 521">평정기준</th> </tr> </thead> </table>	항 목	평정	평정기준			
항 목	평정	평정기준						
<table border="1"> <tr> <td data-bbox="930 521 1005 768">보육 실의 설치 기준</td> <td data-bbox="1023 521 1070 768">준수</td> <td data-bbox="1070 521 1318 768">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td> </tr> <tr> <td data-bbox="930 768 1005 909"></td> <td data-bbox="1023 768 1070 909">미 준수</td> <td data-bbox="1070 768 1318 909">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td> </tr> </table>	보육 실의 설치 기준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미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 실의 설치 기준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미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table border="1"> <tr> <td data-bbox="930 909 1005 1055">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td> <td data-bbox="1023 909 1070 1055">준수</td> <td data-bbox="1070 909 1318 1055">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td> </tr> <tr> <td data-bbox="930 1055 1005 1196"></td> <td data-bbox="1023 1055 1070 1196">미 준수</td> <td data-bbox="1070 1055 1318 1196">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td> </tr> </table>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table border="1"> <tr> <td data-bbox="930 1196 1005 1346">보육 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td> <td data-bbox="1023 1196 1070 1346">준수</td> <td data-bbox="1070 1196 1318 1346">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년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및 전년도 기록 검토                 </td> </tr> <tr> <td data-bbox="930 1346 1005 1420"></td> <td data-bbox="1023 1346 1070 1420">미 준수</td> <td data-bbox="1070 1346 1318 1420">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td> </tr> </table>	보육 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준수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년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및 전년도 기록 검토		미 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보육 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준수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년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및 전년도 기록 검토						
	미 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table border="1"> <tr> <td data-bbox="930 1420 1005 1630">비상 대피 시설 설치</td> <td data-bbox="1023 1420 1070 1630">준수</td> <td data-bbox="1070 1420 1318 1630">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td> </tr> <tr> <td data-bbox="930 1630 1005 1865"></td> <td data-bbox="1023 1630 1070 1865">미 준수</td> <td data-bbox="1070 1630 1318 1865">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td> </tr> </table>	비상 대피 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미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비상 대피 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미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제 목	현 행	개 정																																						
	<p>나. 기본항목 : 7항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항목</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평정</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평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설치기준</li> <li>- 보육실의 설치기준</li> <li>- 보육교직원 배치기준</li> <li>-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li> <li>- 비상대피시설 설치</li> <li>-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li> </ul> </td> </tr> <tr> <td rowspan="2">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td> <td>양호 (1점)</td> <td>&lt;생략&gt;</td> </tr> <tr> <td>미흡 (0점)</td> <td>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td> </tr> <tr> <td rowspan="2">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td> <td>양호 (1점)</td> <td>1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사항 및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영유아보육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 대표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민원</td> </tr> <tr> <td>미흡 (0점)</td> <td>1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사항 및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영유아보육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 * 어린이집, 대표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1~2] (생략)</p>	항목	평정	평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설치기준</li> <li>- 보육실의 설치기준</li> <li>- 보육교직원 배치기준</li> <li>-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li> <li>- 비상대피시설 설치</li> <li>-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li> </ul>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양호 (1점)	<생략>	미흡 (0점)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양호 (1점)	1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사항 및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영유아보육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 대표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민원	미흡 (0점)	1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사항 및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영유아보육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 * 어린이집, 대표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p>나. 기본항목 : 2항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항목</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평정</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평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lt;필수항목으로 이동&gt;</td> </tr> <tr> <td rowspan="2">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td> <td>양호 (2점)</td> <td>&lt;생략&gt;</td> </tr> <tr> <td>미흡 (0점)</td> <td>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td> </tr> <tr> <td rowspan="2">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td> <td>8점 만점</td> <td>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항목별로 감점 처리</td> </tr> <tr> <td>평정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li> <li>- 민원사항 발생 시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li> <li>-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발생시 : 건당 2점 감점</li> </ul> </td> </tr> <tr> <td></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2점 감점</li> <li>-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3점 감점</li> <li>-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아동학대 : 건당 4점 감점</li> </ul> <p>*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교외·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p> <p>* 아동학대는 "라. 인종이 취소되는 경우"의 ④에서 정한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p> <p>* 전체 감점 점수가 8점을 초과할 경우 8점까지만 감점 처리</p>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별지 1~2] &lt;삭제&gt;</td> </tr> </tbody> </table>	항목	평정	평정기준	<필수항목으로 이동>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양호 (2점)	<생략>	미흡 (0점)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8점 만점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항목별로 감점 처리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li> <li>- 민원사항 발생 시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li> <li>-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발생시 : 건당 2점 감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2점 감점</li> <li>-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3점 감점</li> <li>-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아동학대 : 건당 4점 감점</li> </ul> <p>*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교외·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p> <p>* 아동학대는 "라. 인종이 취소되는 경우"의 ④에서 정한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p> <p>* 전체 감점 점수가 8점을 초과할 경우 8점까지만 감점 처리</p>	[별지 1~2] <삭제>		
항목	평정	평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설치기준</li> <li>- 보육실의 설치기준</li> <li>- 보육교직원 배치기준</li> <li>-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li> <li>- 비상대피시설 설치</li> <li>-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li> </ul>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양호 (1점)	<생략>																																						
	미흡 (0점)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양호 (1점)	1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사항 및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영유아보육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 대표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민원																																						
	미흡 (0점)	1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사항 및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영유아보육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 * 어린이집, 대표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항목	평정	평정기준																																						
<필수항목으로 이동>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양호 (2점)	<생략>																																						
	미흡 (0점)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8점 만점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항목별로 감점 처리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li> <li>- 민원사항 발생 시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li> <li>-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발생시 : 건당 2점 감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2점 감점</li> <li>-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3점 감점</li> <li>-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아동학대 : 건당 4점 감점</li> </ul> <p>*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교외·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p> <p>* 아동학대는 "라. 인종이 취소되는 경우"의 ④에서 정한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p> <p>* 전체 감점 점수가 8점을 초과할 경우 8점까지만 감점 처리</p>																																						
[별지 1~2] <삭제>																																								

제 목	현 행	개 정
VII. 3-5세 누리과정		
3. 3-5세 누리과정 운영기준	<전문 개정>	<p>1.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지원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반) 현원에 관계없이 30만원 지급</li> <li>○ (혼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세 혼합반: 30만원 지급 (3-5세 모두 누리과정 대상)</li> <li>- 만 2-3세 혼합반, 만 2세-유아 혼합반: 20만원 지급</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지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매월 보조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지원</li> <li>○ (방법) 담임 교사 자격 확인 후 직접 교사 계좌로 송금</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지급 조건: 3-5세 누리과정 연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세 통합 누리과정 연수 완료 (집합 + 원격)</li> </ul> </li> </ul> <p>2.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지원 수준 및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수준) 시도별 3-5세아 당 7만원 중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후 남은 금액</li> </ul> </li> <li>* 참고 : '12년 만 5세 누리과정 운영비는 아동당 약 4~만원 내외</li> <li>○ (지급방식)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p>□ 지출 항목 및 원칙</p> <p>○ (항목) 5개 항목에 사용하되, '12년 적용 기준보다 범위 확대</p> <p>* 보조교사 인건비(원칙), 교사대상 학습 공동체 활동, 교재교구비 및 교육 기자재 구입비, 급간식비(기 편성된 급식비를 초과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인건비</p> <p>○ (원칙) 누리과정 운영 취지에 따라 일정 규모(3개반)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u>보조교사 채용 및 인건비 항목에 우선 활용</u></p> <p>- 보조교사 인건비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기타 항목 사용 가능</p> <p>&lt; ① <u>보조교사 인건비</u> &gt;</p> <p>○ <u>보육교사의 누리과정 수업 준비 및 평가, 장기간 근무 완화 등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채용 및 인건비에 활용</u></p> <p>▶ <u>누리과정의 3-4세 확대로 운영비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교사 채용 원칙</u></p> <p>○ 보조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소지자로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조교사 등록 필요</p> <p>▶ <u>보조 교사는 최소 4시간/일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70만원 이상 근무자 채용</u></p>

제 목	현 행	개 정
		<p>&lt; ② 기타 항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누리과정 장애 아반의 경우 치료사 포함) 학습 및 연구활동, 교육, 누리과정 운영·평가 등 전문가 자문, 자율공부 모임 등 경비</li> <li>*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불가</li> </ul> </li> <li>○ 급간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편성된 급식비(최소 급식비 지원단가 이상)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li> </ul> </li> <li>○ <u>교재교구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기자재 구입</li> <li>· <u>누리과정에 활용하는 TV, 컴퓨터, DVD 플레이어, 빔프로젝트, 스크린 등 인정</u></li> <li>*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기밥솥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등 <u>누리과정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제외</u></li> <li>· <u>시도(시군구)에서는 지출항목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 적용할 수 있으며, 누리과정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 및 점검 필요</u></li> </ul> </li> <li>○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는 보육교사의 보육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li> </ul> </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의 업무 범위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보조행위로 한정</li> <li>* 수행가능한 업무 범위(예시) : 누리과정 운영·평가 관련 행정지원, 수업 전후의 준비 및 정리, 간식준비 및 배식 지원, 환경미화업무 등</li> <li>·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의 채용·관리 등에 대하여 지자체의 지도·관리 필요</li> </ul> <p>3. 장애아 비용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보육료 지원 : 총 41.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 22만원 : 국고+지방비</li> <li>+지방교육재정교부금</li> <li>19.4천원 : 국고 + 지방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세 누리과정 대상 아동 2명 이상 : 30만원</li> <li>○ 3-5세 누리과정 대상 아동 1명 : 20만원</li> </ul> </li> </ul> <p>4.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기본원칙 : 1, 2급 보육교사 (만5세 장애아의 경우 특수교사도 가능)</li> <li>○ 1급 보육교사 우선, 경력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권고</li> <li>○ <u>3-5세 통합 누리과정 교사 연수 받드시 이수 필요</u></li> <li>※ <u>기존 5세 누리과정 이수자도 금번 3-5세 누리과정이 전면 개편되었으므로 이수 필요 (유치원 교사도 동일), 미이수시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미지급</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원장의 보육교사 검직은 불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 어린이집(시행규칙 별표 2) 및 도서·벽지·농어촌지역 특례 인정 어린이집(21-39인, 법 제52조)의 경우 원장 검직은 가능하나 <u>처우 개선비 미지급</u></li> </ul> </li> <li>※ <u>보육교사 검직 원장도 누리과정 연수 필요(미이수시 운영비 미지급)</u></li> <li>□ <u>3급 보육교사 일정기간(1년) 예외적 허용</u></li> <li>○ (필요성)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 현실 고려할 필요</li> <li>○ (대상) 행정구역 상 읍·면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1·2급 보육교사 수급이 곤란한 경우 (시·군·구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군·구: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3급 보육교사 채용을 승인하고 가급적 1-2급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li> </ul> </li> <li>□ <u>이수관리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담당교사 관리 추진</u></li> <li>○ <u>교육이수 여부 등 이력 관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시·군·구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이수 유효</li> </ul> </li> <li>○ <u>교육이수 시 보육교사 등 정보를 보육진흥원에서 취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등 필요시 지자체에서 교육이수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 추진</li> </ul> </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b>VIII. 보육예산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b>		
1. 보육료지원 총괄	<p>나. 지원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정부지원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수납한도 설정액까지만 지원</u> (예시)</li> </ul> <p>라. 중복지원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교육과학기술부 유아학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중복 지원하지 아니함</u></li> <li>○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 - (생략) - <u>시·군·구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보육료 지원 대상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의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u></li> </ul>	<p>나. 지원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삭제</u></li> </ul> <p>(예시)&lt;삭 제&gt;</p> <p>라. 중복지원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교육부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치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중복 지원하지 아니함.</u></li> <li>○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 - (생략) - &lt;삭 제&gt;</li> </ul>
2. 0~5세 보육료	<p>가. 지원대상(만0세~4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정저소득층 아동</u> (생략)</li> <li>2) <u>기타 만0~4세 보육료 지원 아동</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이용 만0~2세아 (소득수준 무관)</li> <li>○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3~4세아</li> </ul> </li> </ol>	<p>가. 지원대상(만0세~5세)</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어린이집 이용 만0~5세아(소득수준 무관)</u></li> </ul> <p>※ <u>지원제외 대상</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0.1.1일 이후 출생아동. 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p>나. 선정기준</p> <p>다. 지원단가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연 령</th> <th colspan="3">지원단가</th> </tr> <tr> <th>종일</th> <th>야간</th> <th>24시</th> </tr> </thead> <tbody> <tr> <td>만0세</td> <td>394,000</td> <td>394,000</td> <td>591,000</td> </tr> <tr> <td>만1세</td> <td>347,000</td> <td>347,000</td> <td>520,500</td> </tr> <tr> <td>만2세</td> <td>286,000</td> <td>286,000</td> <td>429,000</td> </tr> <tr> <td>만3세</td> <td>197,000</td> <td>197,000</td> <td>295,500</td> </tr> <tr> <td>만4세</td> <td>177,000</td> <td>177,000</td> <td>265,500</td> </tr> </tbody> </table>	연 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만0세	394,000	394,000	591,000	만1세	347,000	347,000	520,500	만2세	286,000	286,000	429,000	만3세	197,000	197,000	295,500	만4세	177,000	177,000	265,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u></li> <li>- <u>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u></li> <li>- <u>농어촌양육수당 및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u></li> <li>- <u>종일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아동</u></li> </ul> <p>&lt;삭 제&gt;</p> <p>나. 지원단가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연 령</th> <th colspan="3">지원단가</th> </tr> <tr> <th>종일</th> <th>야간</th> <th>24시</th> </tr> </thead> <tbody> <tr> <td>만0세</td> <td>394,000</td> <td>394,000</td> <td>591,000</td> </tr> <tr> <td>만1세</td> <td>347,000</td> <td>347,000</td> <td>520,500</td> </tr> <tr> <td>만2세</td> <td>286,000</td> <td>286,000</td> <td>429,000</td> </tr> <tr> <td>만3세</td> <td>220,000</td> <td>220,000</td> <td>330,000</td> </tr> <tr> <td>만4세</td> <td>220,000</td> <td>220,000</td> <td>330,000</td> </tr> <tr> <td>만5세</td> <td>220,000</td> <td>220,000</td> <td>330,000</td> </tr> </tbody> </table> <p>* 만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 만34세 보육료는 국비, 지방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함께 부담</p> <p>** 2010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상위반 편성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p>	연 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만0세	394,000	394,000	591,000	만1세	347,000	347,000	520,500	만2세	286,000	286,000	429,000	만3세	220,000	220,000	330,000	만4세	220,000	220,000	330,000	만5세	220,000	220,000	330,000
연 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만0세	394,000	394,000	591,000																																																									
만1세	347,000	347,000	520,500																																																									
만2세	286,000	286,000	429,000																																																									
만3세	197,000	197,000	295,500																																																									
만4세	177,000	177,000	265,500																																																									
연 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만0세	394,000	394,000	591,000																																																									
만1세	347,000	347,000	520,500																																																									
만2세	286,000	286,000	429,000																																																									
만3세	220,000	220,000	330,000																																																									
만4세	220,000	220,000	330,000																																																									
만5세	220,000	220,000	330,000																																																									
3. 장애아 보육료	가. 지원대상(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	가. 지원대상(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																																																										

제 목	현 행	개 정
	<p>○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p> <p>-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p> <p>※ 만 3세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는 2012년 3월부터 지원</p> <p>-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p> <p>(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lt;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gt;를 제출한 경우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p> <p>※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u>교육인적사원</u>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p>	<p>○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p> <p>-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p> <p>※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3년 3월부터 지원</p> <p>-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p> <p>(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u>진단·평가 결과 통지서</u>를 제출한 경우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p> <p>※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u>교육부</u>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p>

제 목	현 행	개 정
	<p>- <u>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 및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도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u></p> <p>※ '06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재원 아동):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13.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p> <p>※ '06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일전 2개월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3.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06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13.2월까지 지원 가능)</p> <p>-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u>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u>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p>	<p>- <u>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u></p> <p>※ '07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재원 아동):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14.2월까지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12년 11월1일 이후 신규 신청하여 신규장애아보육료 자격 책정자는 '13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p> <p>※ '07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4.2월까지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07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14.2월까지 지원 가능)</p> <p>-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u>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u></p>

제 목	현 행	개 정
	<p>※ 단, '99년 출생한 <u>장애아 복지카드</u>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13. 2월 까지 <u>장애아 무상보육료</u> 지원 가능</p> <p>-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p> <p>※ <u>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u></p> <p>나. 선정기준</p> <p>○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u>의사의 장애진단서</u>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p> <p>○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p> <p>- 제출된 <u>장애진단서</u>(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p> <p>-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등록 사업안내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p>	<p>※ 단, '00년 출생한 <u>장애인 복지카드</u>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14. 2월 까지 <u>장애아보육료</u> 지원 가능</p> <p>-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p> <p>※ <u>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u></p> <p>나. 선정기준</p> <p>○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u>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u>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p> <p>○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p> <p>- 제출된 <u>의사의 진단서</u>(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p> <p>- 또한, 진단기관은 <u>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u>의 기준에 한정</p>

제 목	현 행	개 정										
	<p>○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p> <p>- 제출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의 결정사항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별표]에 있는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임이 명기되어야 함</p>	<p>&lt;삭 제&gt;</p>										
<p>4. 다문화 보육료</p>	<p>가. 지원대상</p> <p>○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p> <p>- (생략)</p> <p>- 취학대상(2005. 1. 1 ~ 12.31 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p> <p>※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함</p>	<p>가. 지원대상</p> <p>○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p> <p>- (생략)</p> <p>- 취학대상(2006. 1. 1 ~ 12.31 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p> <p>※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함</p>										
<p>5. 방과후 보육료</p>	<p>가. 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p> <p>○ (생략)</p> <p>■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p> <p>(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data-bbox="507 1765 895 1845"> <tr> <td>가구원수</td> <td>3인까지</td> <td>4인</td> <td>5인</td> <td>6인</td> </tr> <tr> <td>소득인정액</td> <td>147</td> <td>180</td> <td>213</td> <td>246</td> </tr> </table>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47	180	213	246	<p>가. 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p> <p>○ (생략)</p> <p>&lt;삭 제&gt;</p>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47	180	213	246								

제 목	현 행	개 정
	<p>&lt;신설&gt;</p>	<p>[참고]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권자 포함)</li> <li>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li> <li>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li> <li>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li> <li>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li> <li>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li> <li>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li> <li>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차상위자 할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li> <li>⑨ 우선돌봄차상위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li> </ol> <p>→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자격을 보유할 경우 조사제외 처리</p> <p>※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p> <p>-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⑨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⑨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p>



제 목	현 행	개 정
	<p>나. 지원단가</p> <p>1) 일반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만4세아 정부지원단가의 50%</u>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li> </ul> <p>2) 장애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장애아 무상보육료 50%</u> (197,000원)(국비+지방비)</li> </ul> </li> <li>○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시·도지사가 정한 만4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u></li> </ul> </li> </ul> <p>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만4세아 정부지원단가의 100%</u>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li> <li>○ 장애아동은 <u>장애아 무상보육료 100%</u> 지원(국비+지방비)</li> </ul> <p>&lt;신 설&gt;</p> <p>(생략)</p>	<p>나. 지원단가</p> <p>1) 일반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월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u></li> </ul> <p>2) 장애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장애아 방과후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u>(197,000원)(국비+지방비)</li> </ul> </li> <li>○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u></li> </ul> </li> </ul> <p>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월2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u></li> <li>○ 장애아동은 <u>장애아보육료 100%</u> 지원(국비+지방비)</li> </ul> <p>※ <u>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u> (예,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10/26 지급)</p> <p>(생략)</p>

제 목	현 행	개 정
	<p>라. <u>장애아보육료</u> 집행 및 정산은 <u>만 4세이하</u> 보육료와 동일한 지원체계 유지</p>	<p>라. <u>장애아방과후보육료</u> 집행 및 정산은 <u>만2세이하</u> 보육료와 동일한 지원체계 유지</p>
<p>6. 시간연장형 보육료</p>	<p>○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4세 보육료, 5세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무상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p> <p>○ 지원단가 ※ 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u>별도</u> 수납 가능</p> <p>&lt;신 설&gt;</p>	<p>○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u>만 0세~2세</u> 보육료, <u>만3~5세</u> 누리과정보육료, <u>다문화보육료</u> 및 <u>장애아보육료(취학전)</u>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p> <p>○ 지원단가 ※ 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u>수납</u> 가능</p> <p>○ <u>이용신청 및 등록</u> 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lt;서식 IX-5-1&gt;를 해당 어린이 집에 제출하여야 시간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료 지원이 가능함</u></li> <li>- <u>원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내용을 입력(휴대폰인증 필수) 하고 이용희망자로 등록</u></li> <li>- <u>원장은 신청서를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일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에 보관</u></li> <li>- <u>보호자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변경 또는 퇴소하고자 할 경우 기존 이용 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보육반에서 탈반·퇴소를 요청하고, 변경 되는 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보육신청서&lt;서식 IX-5-1&gt;를 제출 하여야 한다.</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p>나. 야간 보육료 (중략) ○ 지원단가 : 만0세~4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p> <p>다. 24시간 보육료 (중략) ○ 지원단가 : 만0세~4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p> <p>라.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중략)</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예시</b> 2일 이용한 소득하위70%층,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 197,000원* 2/26(일)*150% = 22,610원(원단위 절삭)</p> </div>	<p>○ '13.1.31현재 시간연장보육 이용아동에 대한 경과조치 - '13.1.31현재 시간연장보육 이용아동의 보호자가 '13.3월이후에도 계속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13.2.28일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lt;서식 IX-5-1&gt;를 해당어린이집에 제출하고, 원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내을 입력(휴대폰인증 필수)하여야 한다.</p> <p>나. 야간 보육료 (중략) ○ 지원단가 :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p> <p>다. 24시간 보육료 (중략) ○ 지원단가 :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p> <p>라.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중략)</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예시</b>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 220,000원* 2/26(일)*150% = 25,380원(원단위 절삭)</p> </div>
<p>8. <u>가정양육수당</u> <u>지원 개요</u></p>	<p>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p> <p>○ 차상위이하 36개월미만 아동</p>	<p>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u>중</u> <u>일제아이돌봄서비스</u>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아동</p> <p>○ 만5세이하, 소득수준 무관 <u>소</u></p>

제 목	현 행	개 정
	<p>○ 취학전 농어촌거주아동 (최대84개월)</p> <p>○ 취학전 등록 장애아동 (최대84개월)</p> <p>나. 지원금액 : 월 10~20만원                      ※ 12개월미만 : 월 20만원, 24개월미만 : 월15만원, 36개월미만 : 월 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연령별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의 45%</p> <p>사.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 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취학전 만5세까지 지원(최대84개월까지)</p> <p>-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3년, 출생월-1월                      - 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6년 12월까지 지원</p>	<p>계층 아동</p> <p>나.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 월 20만원, 24개월미만 : 월15만원, 36개월미만 : 월 10만원, <u>36개월이상~취학전 : 월 10만원</u>                      ○ <u>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미만 : 월 20만원, 24개월미만 : 월17.7만원, 36개월미만 : 월 15.6만원, 36개월이상~48개월미만 : 월 12.9만원, 48개월이상 : 월10만원</u></p> <p>사.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p> <p>-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월까지 지원</p>

제 목	현 행	개 정										
	<p>아. 선정기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어린이집 미이용아동 : 차상위 이하</u></li> </ul> <table border="1" data-bbox="507 622 895 703"> <tr> <td>가구원수</td> <td>3인까지</td> <td>4인</td> <td>5인</td> <td>6인</td> </tr> <tr> <td>금액(만원)</td> <td>147</td> <td>180</td> <td>213</td> <td>246</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농어촌 양육수당 : 농지5만㎡, 농어업의 소득 연간 4천만원 미만(1자녀 기준)</u></li> <li>○ <u>장애아동 양육수당 : 소득수준무관</u></li> </ul>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금액(만원)	147	180	213	246	<p>아. 선정기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소득수준 무관</u></li> </ul> <p><u>단,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 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u></p>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금액(만원)	147	180	213	246								
<p>9. 양육수당 지원 업무 처리 절차 및 기준</p>	<p>나. 수당지급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격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한다</u></li> <li>○ <u>장기 국외 체류할 경우 양육수당 지원 제한 :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이 90일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중단한다 (90일이 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중지되므로 익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u></li> </ul>	<p>나. 수당지급 기준</p> <p>&lt;삭 제&gt;</p>										

제 목	현 행	개 정
IX.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지원)		
<p>2.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등 지원</p>	<p>나. 지원기준</p> <p>1) 원장 : 인건비 80% 지원 &lt;신설&gt;</p> <p>2) 보육교사 :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가) 영아반교사 : 인건비의 80% 지원 (나) 유아반교사 : 인건비의 30% 지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국고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방법 · 산출식 :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p> <p>&lt;중략&gt;</p> <p>*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p> <p>&lt;신 설&gt;</p> </div>	<p>나. 지원기준</p> <p>1) 원장 : 인건비 80% 지원 &lt;신설&gt;</p> <p>※ <u>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u>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p> <p>2) 보육교사 :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가) 영아반교사 : 인건비의 80% 지원 (나) 유아반교사 : 인건비의 30% 지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국고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방법 · 산출식 :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p> <p>&lt;중략&gt;</p> <p>*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u>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u>)</p> </div>
<p>3. 장애아보육지원</p>	<p>가. 총괄</p> <p>1)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생략)</p> <p>2)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가) 시·도지사가 장애아전담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p>	<p>가. 총괄</p> <p>1) 장애아전문어린이집신축비 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생략)</p> <p>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p>

제 목	현 행	개 정
	<p>을 전제)으로 지정한 시설 : 인건비 지원</p> <p>(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전담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한 시설 : 장애아 1인당 기본보육료 361천원 지원</p> <p>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대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또는 120만원 지원</p> <p>4)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 참조 (생략) ○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거나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시·도지사가 정한 만4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p> <p>5) 장애아보육 내실화 ○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근 장애아전담·통합어린이집 또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등을</p>	<p>(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인건비 지원</p> <p>(나)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 받았으나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원 미승인 시설 : 장애아 1인당 기본보육료 361천원 지원</p> <p>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대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0만원 지원</p> <p>4)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 참조 (생략) ○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거나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해당 반별 상한액</p> <p>5) 장애아보육 내실화 ○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또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등을</p>

제 목	현 행	개 정
	<p>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나.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지원</p> <p>1) 시설 정의</p> <p>○ <u>미취학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u></p> <p>2) 반영성 기준</p> <p>○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p> <p>-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보육 현원이 10명 미만이라면 연령구분 없이 2세반과 혼합보육할 수 있으며 교사대 아동 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p> <p>- 단, 이 경우 영아반을 우선 편</p>	<p>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p> <p>1)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p> <p>○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p> <p>※ 보건복지부장관 인건비 지원 미승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 없음(치료사, 취사부,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p> <p>2) 반영성 기준</p> <p>○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p> <p>-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보육 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p>



제 목	현 행	개 정
	<p><u>성하고 정원을 채우고 난 이후에 불가피하게 영유아 혼합반을 편성하는 경우에 한함</u></p> <p>4)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 시설)                      ○ 원장 :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                      - 장애아동 현원이 <u>18명</u> 이상이고 <u>6개반</u>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 9명 이상이고 장애아 종일반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u>18명</u>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p> <p>(생략)</p> <p>○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p> <p>5) 지정절차                      ○ 장애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lt;서식 IX-1&gt;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u>시·도지사에게 제출</u></p> <p>- 시·도지사는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u>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u></p>	<p><u>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이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u></p> <p>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 시설)                      ○ 원장 :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                      - 장애아동 현원이 <u>12명</u> 이상이고 <u>4개반</u>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 9명 이상이고 장애아 종일반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u>12명</u>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p> <p>(생략)</p> <p>○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p> <p>4) 지정절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u>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u>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u>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u></p> <p>○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u>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u></p>

제 목	현 행	개 정
	<p><u>장애아전담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lt;서식 IX-2&gt;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정부지원 사전승인)</u></p> <p>※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애아전담사업은 신규지정이 없음</p> <p>6) 지정취소</p> <p>○ <u>시·도지사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u></p> <p>① <u>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u></p> <p>② <u>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되는 경우</u></p> <p>③ <u>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u>이 정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정부지원 사전승인)을 받아야 인건비 지원 가능)</u></p> <p>5) 지정취소</p> <p>○ <u>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p> <p>①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u></p> <p>② <u>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u></p> <p>③ <u>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u></p> <p>④ <u>법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u></p> <p>⑤ <u>법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u></p> <p>⑥ <u>법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u></p>

제 목	현 행	개 정
	<p>○ <u>시·도지사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u></p> <p>○ <u>지정 취소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u></p> <p>○ <u>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의 경우 지정요건 및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u></p> <p>&lt;신 설&gt;</p>	<p>⑦ <u>법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u></p> <p>⑧ <u>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u></p> <p>⑨ <u>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u></p> <p>○ <u>시·군·구청장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u></p> <p>○ <u>지정 취소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u></p> <p>&lt;삭 제&gt;</p> <p>6) <u>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산정 기준 및 방법</u></p> <p>○ <u>면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나목 1)을 따르며,</u></p>

제 목	현 행	개 정
		<p>○ <u>산정방법은 장애아를 12명이상 정원에 포함하고, 총정원의 60% 이상이 장애아 정원으로 산정하여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가능</u></p> <p>※ <u>(장애아 최소 정원산정 예시) 어린이집 총면적 200㎡, 보육실면적 150㎡인 경우 (종전) 총 22명</u>  <u>→ (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 비장애아 11명)</u></p> <p>예1) <u>보육실기준 :</u>  <u>(종전) 총 22명*6.6㎡ →</u>  <u>(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6.6㎡, 비장애아 11명*2.64㎡)</u></p> <p>예2) <u>총면적기준 :</u>  <u>(종전) 총 25명*7.83㎡ →</u>  <u>(변경) 총 31명(장애아 19명*7.83㎡, 비장애아 12명*4.29㎡)</u></p>
	<p>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p> <p>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p> <p>○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 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p> <p>- 정부지원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p> <p>- 민간지정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p> <p>※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월 임금으로만 지급(기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급 불가)</p>	<p>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p> <p>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p> <p>○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p> <p>- 정부지원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p> <p>- 민간지정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30만원을 지원</p> <p>※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전액 월 임금으로만 지급(사용자 부담 분의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급 불가)</p>

제 목	현 행	개 정
	<p>○ &lt;신 설&gt;</p> <p>4) 통합시설 지정절차</p> <p>○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lt;서식 IX-3&gt;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p> <p>○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한 후 &lt;서식 IX-4&gt;의 지정서를 교부</p> <p>6) 지정취소</p> <p>○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p> <p>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p> <p>②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개월간 연속으로 장애아 종일반 지원이 중단된 경우</p>	<p>○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p> <p>4) 통합시설 지정절차</p> <p>○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p> <p>○ 시·군·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p> <p>6) 지정취소 &lt;삭 제&gt;</p>

제 목	현 행	개 정																																																																																																
	<p>③ <u>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u></p> <p>④ <u>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lt;신 설&gt;</p> <p>(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지정 주체</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인건비 지원 (교사1인)</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보육료 지원 (장애아인)</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1. 장애아전문 지정 어린이집 :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td> </tr> <tr> <td>-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td> <td>시장·군수· 구청장</td> <td>80%</td> <td>394천원</td> </tr> <tr> <td>-인건비 미지원(보건복지부장관 미승인)</td> <td>시장·군수· 구청장</td> <td>-</td> <td>394천원</td> </tr> <tr> <td colspan="4">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td> </tr> <tr> <td>인건비 지원</td> <td>시장· 군수· 구청장</td> <td>80% (국공립· 법인) 120만원 (민간)</td> <td>394천원</td> </tr> </tbody> </table> <p>(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지정 주체</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인건 비지원 (교사 1인)</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3. 일반어린이집 :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정부 지원 시설</td> <td>- 1대 3기준 (0세반)</td> <td>80%</td> <td>394천원</td> </tr> <tr> <td>- 1대 5기준 (1세반)</td> <td>80%</td> <td>347천원</td> </tr> <tr> <td>- 1대 7기준 (2세반)</td> <td>80%</td> <td>286천원</td> </tr> <tr> <td>- 1대 15기준 (3세반)</td> <td>30%</td> <td>197천원</td> </tr> <tr> <td>- 1대 20기준 (4세반이상)</td> <td>30%</td> <td>177천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 지원 (교사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인)	1. 장애아전문 지정 어린이집 :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시장·군수· 구청장	80%	394천원	-인건비 미지원(보건복지부장관 미승인)	시장·군수· 구청장	-	394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인건비 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	80% (국공립· 법인) 120만원 (민간)	394천원	구분	지정 주체	인건 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3. 일반어린이집 :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 지원 시설	- 1대 3기준 (0세반)	80%	394천원	- 1대 5기준 (1세반)	80%	347천원	- 1대 7기준 (2세반)	80%	286천원	- 1대 15기준 (3세반)	30%	197천원	- 1대 20기준 (4세반이상)	30%	177천원	<p>○ <u>취소 기준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취소 기준과 동일</u></p> <p>(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지정 주체</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인건비 지원 (교사1인)</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보육료 지원 (장애아인)</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1. 장애아전문 지정 어린이집 :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td> </tr> <tr> <td>-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td> <td>시장·군수· 구청장</td> <td>80%</td> <td>394천원 (누리과정 414천원)</td> </tr> <tr> <td>-인건비 미지원(보건복지부장관 미승인)</td> <td>시장·군수· 구청장</td> <td>-</td> <td>394천원 (누리과정 414천원)</td> </tr> <tr> <td colspan="4">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td> </tr> <tr> <td>인건비 지원</td> <td>시장· 군수· 구청장</td> <td>80% (국공립· 법인) 130만 (민간)</td> <td>394천원 (누리과정 414천원)</td> </tr> </tbody> </table> <p>(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지정 주체</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인건비 지원 (교사 1인)</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3. 일반어린이집 :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정부 지원 시설</td> <td>- 1대 3기준 (0세반)</td> <td>80%</td> <td>394천원</td> </tr> <tr> <td>- 1대 5기준 (1세반)</td> <td>80%</td> <td>347천원</td> </tr> <tr> <td>- 1대 7기준 (2세반)</td> <td>80%</td> <td>286천원</td> </tr> <tr> <td>- 1대 15기준 (3세반)</td> <td>30%</td> <td>220천원</td> </tr> <tr> <td>- 1대 20기준 (4세반이상)</td> <td>30%</td> <td>220천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 지원 (교사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인)	1. 장애아전문 지정 어린이집 :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시장·군수· 구청장	80%	394천원 (누리과정 414천원)	-인건비 미지원(보건복지부장관 미승인)	시장·군수· 구청장	-	394천원 (누리과정 414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인건비 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	80% (국공립· 법인) 130만 (민간)	394천원 (누리과정 414천원)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 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3. 일반어린이집 :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 지원 시설	- 1대 3기준 (0세반)	80%	394천원	- 1대 5기준 (1세반)	80%	347천원	- 1대 7기준 (2세반)	80%	286천원	- 1대 15기준 (3세반)	30%	220천원	- 1대 20기준 (4세반이상)	30%	220천원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 지원 (교사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인)																																																																																															
1. 장애아전문 지정 어린이집 :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시장·군수· 구청장	80%	394천원																																																																																															
-인건비 미지원(보건복지부장관 미승인)	시장·군수· 구청장	-	394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인건비 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	80% (국공립· 법인) 120만원 (민간)	394천원																																																																																															
구분	지정 주체	인건 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3. 일반어린이집 :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 지원 시설	- 1대 3기준 (0세반)	80%	394천원																																																																																															
	- 1대 5기준 (1세반)	80%	347천원																																																																																															
	- 1대 7기준 (2세반)	80%	286천원																																																																																															
	- 1대 15기준 (3세반)	30%	197천원																																																																																															
	- 1대 20기준 (4세반이상)	30%	177천원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 지원 (교사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인)																																																																																															
1. 장애아전문 지정 어린이집 :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시장·군수· 구청장	80%	394천원 (누리과정 414천원)																																																																																															
-인건비 미지원(보건복지부장관 미승인)	시장·군수· 구청장	-	394천원 (누리과정 414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인건비 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	80% (국공립· 법인) 130만 (민간)	394천원 (누리과정 414천원)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 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3. 일반어린이집 :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 지원 시설	- 1대 3기준 (0세반)	80%	394천원																																																																																															
	- 1대 5기준 (1세반)	80%	347천원																																																																																															
	- 1대 7기준 (2세반)	80%	286천원																																																																																															
	- 1대 15기준 (3세반)	30%	220천원																																																																																															
	- 1대 20기준 (4세반이상)	30%	220천원																																																																																															

제 목	현 행	개 정
<p>4.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p>	<p>4.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p> <p>가.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민간지정, 국공립 및 <u>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시설</u>)</li> </ul> <p>나. 운영기준</p> <p>1) 보육아동 정원 책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2세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u>지정 취소 사항</u>) (연령은 '12년 1월 1일 기준으로 2세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li> </ul> <p>&lt;신 설&gt;</p>	<p>4.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p> <p>가.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민간지정, 국공립 및 <u>사회복지법인시설</u>)</li> </ul> <p>나. 운영기준</p> <p>1) 보육아동 정원 책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2세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 (연령은 '13년 1월 1일 기준으로 2세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li> </ul> <p>2) <u>반편성 기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 범위 내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음.</li> <li>- <u>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아반을 우선 편성하여야 하며, 유아보육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p>다. 지원기준 (생략) ○ 보육교사 (생략) - 국공립 및 <u>비영리 사회복지법인</u>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 <u>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u>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p>	<p><u>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이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u></p> <p>다. 지원기준 (생략) ○ 보육교사 (생략) - 국공립 및 <u>사회복지법인</u>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 <u>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u>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p>
<p>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339p)</p>	<p>4) 지원기준 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p>	<p>4) 지원기준 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p>
	<p>(중략) - 민간어린이집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u>100만원</u> 지원 <u>&lt;신 설&gt;</u></p>	<p>(중략) - 민간어린이집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u>120만원</u> 지원 ※ <u>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중 월 110만원 이상은 월 임금으로 지급하고 임금지급 후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u></p>



제 목	현 행	개 정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한편,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li> <li>※ 시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u>시설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음</u></li> <li>○ 시간연장교사 근무시간은 조기출근이 가능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u>총 8시간 이내에서(6시간 이상 근무) 시설별 특성에 따라 준비 및 정리 등을 포함, 시간연장 보육 전후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음(단, 19:30~21:30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u></li> </ul> </li> </ul> <p>나)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 보육교사(보육교사 겸임 가능한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li> <li>- 시간연장반 별 월 <u>30만원</u> 지원</li> </ul>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한편,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li> <li>※ 시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u>시설당 보육아동 5명을 초과할 수 없음</u></li> <li>○ 시간연장교사 근무시간은 조기출근이 가능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u>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 원칙</u></li> </ul> </li> </ul> <p>나)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 보육교사(보육교사 겸임 가능한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li> <li>- 시간연장반 별 월 <u>40만원</u> 지원</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p>나. 24시간 어린이집 - 민간지정시설 : 보육교사 <u>1인당 100만원을 지급</u></p> <p>다. 휴일 어린이집 3) 인건비 지원 기준 ○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 지원 ※ 휴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 없이 기존의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p> <p>&lt;신 설&gt;</p>	<p>나. 24시간 어린이집 - 민간지정시설 : 보육교사 <u>1인당 120만원을 지원</u> * <u>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중 월 110만원 이상은 월 임금으로 지급하고 임금지급 후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u></p> <p>다. 휴일 어린이집 3) 인건비 지원 기준 ○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 지원 ※ 휴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 없이 기존의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p> <p>○ <u>휴일 보육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이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적용할 수 있음. 한편,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u></p> <p>* <u>휴일보육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당 휴일반2개반을 초과할 수 없음</u></p>
6. 방과후 어린이집	2) 인건비 지원기준 <신 설>	2) 인건비 지원기준 ○ <u>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u>

제 목	현 행	개 정
9.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p>가. 대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12월말 현재 설치·운영 중인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li> <li>-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장애아전담 어린이집(법인, 민간지정 포함) 및 영아전담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li> </ul>	<p>가. 대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12월말 현재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li> <li>○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민간지정 포함) 및 영아전담어린이집 중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li> </ul>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p>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p> <p>나. 지원대상 및 내역</p> <p>(가) 국공립시설 신축</p> <p>(1)지원대상 및 우선순위</p> <p>* 구체적인 국공립신축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13년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12.3월경)부터 반영할 예정</p>	<p>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p> <p>나. 지원대상 및 내역</p> <p>(가) 국공립시설 신축</p> <p>(1)지원대상 및 우선순위</p> <p>* 구체적인 국공립신축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14년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13.3월경)부터 반영할 예정</p>
11.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p>아.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p> <p>(3) 어린이집의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p> <p>○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지역에 한해 <u>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u>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아 연령전체(0~2세) 혼합반구성과 가정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 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다.</p>	<p>아.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p> <p>(3) 어린이집의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p> <p>○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지역에 한해 <u>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u>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아 연령전체(0~2세) 혼합반구성과 가정어린이집 기준에</p>

제 목	현 행	개 정
		<p>준하여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다.</p>
<p>12.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p>	<p>4) 대체교사 채용</p> <p>○ 각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를 거주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채용</p> <p>- 지원단가: 월 1,523천원(교통비 10만원, 퇴직적립금 7만2천원,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2012년 1월부터 적용)</p> <p>※ 사도별 퇴직적립금 적립 규모에 따라 추가로 퇴직적립금이 필요한 사도에서는 예산현황 등을 감안하여 퇴직적립금 추가 지원(적립)가능</p> <p>&lt;신 설&gt;</p> <p>○ 휴가가 집중(7~8월)되는 시기에 대체교사를 보다 많이 파견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운영</p> <p>- (현재) 고정 고용 → (변경) 일부 고정 고용 + 휴가 기간 집중 고용</p>	<p>4) 대체교사 채용</p> <p>○ 각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를 거주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채용</p> <p>- 지원단가: 월 1,569천원(교통비 10만원, 퇴직적립금 7만4천원,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2013년 1월부터 적용)</p> <p>※ 사도별 퇴직적립금 적립 규모에 따라 추가로 퇴직적립금이 필요한 사도에서는 예산현황 등을 감안하여 퇴직적립금 추가 지원(적립)가능</p> <p>※ 2013년 3월 이후 대체교사를 도서·벽지·농어촌 지역(교사 대 이동비율 특례인정이 가능한 지역) 어린이집으로 파견함에 따라 월 10만원을 넘는 교통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초과지급(월 10만원 한도 내) 가능</p> <p>○ 휴가가 집중(7~8월)되는 시기에 대체교사를 보다 많이 파견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운영</p> <p><u>(예) 일부 고정 고용과 휴가 기간 집중 고용을 병행</u></p>
<p>13.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p>	<p>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p> <p>1) 지원내용</p> <p>○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5 원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12.3월~)</p>	<p>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p> <p>1) 지원내용</p> <p>○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12만원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13.3월~)</p>

제 목	현 행	개 정
	<p>2)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li> </ul>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제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li> </ul> </li> <li>※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은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급</li> <li>-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받고 있으므로 제외)</li> </ul> <p>&lt;신 설&gt;</p> <p>나. 교사겸직원장 지원</p> <p>1)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 5만원 지원</li> </ul>	<p>2)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li> </ul> <p>* <u>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제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li> </ul> </li> <li>※ <u>동일시설, 다른 시설의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근무환경개선비 미지원</u></li> <li>- <u>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받고 있으므로 제외)</u></li> </ul> <p>※ <u>연수미이수의 사유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누리과정 연수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 3회 내에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가능. 신청자(원장) 및 사군구 담당자는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 철저</u></p> <p>나. 교사겸직원장 지원</p> <p>1)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 <u>7만 5천원</u> 지원 (<u>13.3월~</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p>3) 지급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원장통장으로 입금</li> <li>- <u>12월분은 원장이 12월 20일까지 신청하고 시·군·구는 12월 26일까지 어린이집에 지급</u></li> </ul>	<p>3) 지급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원장통장으로 입금</li> <li>- <u>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u></li> </ul>
<p>14. 공공형어린이집</p>	<p>라. 운영기준</p> <p>(8)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필수 공개사항&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증 : ①점수 총점, 2개 이상의 영역별 점수, ②평가인증 연도 및 유효기간</li> <li>* 보육교직원 현황 : ①원장 전문성(자격 취득사항, 원장 근무기간, 경력), ②보육교직원 현황(보육교사별 자격현황: 1급·2급·3급 자격 현황, 해당 어린이집 근무기간)</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활동 : ①실시 과목 수, ②과목별 실시 요일, 시간대, ③과목별 월 비용, ④운영 강사 인적사항(이름, 최종학력, 전공, 소속 업체명)</li> <li>* 급식: ①주간, 월간 식단표, ②급식 재료 구매처, 구매 주기 등</li> <li>* 예·결산 내역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산 및 결산 내역</li> </ul> </div> <p>자.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취소 절차 : <u>보건복지부에서</u> 선정 취소</li> </ul>	<p>라. 운영기준</p> <p>(8)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필수 공개사항&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증 : ①점수 총점, 전 영역 점수, ②평가인증 연도 및 유효기간</li> <li>* 보육교직원 현황 : ①원장 전문성(자격 취득사항, 원장 근무기간, 경력), ②보육교직원 현황(보육교사별 자격현황: 1급·2급·3급 자격 현황, 해당 어린이집 근무기간)</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활동 : ①실시 과목 수, ②과목별 실시 요일, 시간대, ③과목별 월 비용, ④운영 강사 인적사항(이름, 경력, 소속(업체명))</li> <li>* 급식: ①주간, 월간 식단표, ②급식 재료 구매처, 구매 주기 등</li> <li>* 예·결산 내역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산 및 결산 내역</li> </ul> </div> <p>자.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취소 절차 : <u>시·도에서</u> 선정 취소</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시·군·구는 선정 후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사전 서면통지하고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통지</u></li> <li>- <u>해당 어린이집은 이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해당 시·군·구에 제출</u></li> <li>- <u>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는 취소 사유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서면통보</u></li> <li>- <u>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선정취소 사유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의 선정 취소</u></li> <li>- <u>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취소 통보를 하고 보조금 지급 중지 등 관련조치 함</u></li> <li>- <u>시·군·구는 선정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서면통보</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시·도는 선정 후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 처분(처분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청문, 행정처분)</u></li> <li>- <u>시·도(시·군·구)는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처분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서면 통보</u></li> </ul> <p>&lt;삭 제&gt;</p> <p>&lt;삭 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취소 통보를 하고 보조금 지급 중지 등 관련조치 함</u></li> <li>- <u>시·군·구는 선정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서면 통보</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15.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신 설>	<p>가.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해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 일부 지원</u></li> </ul> <p>나.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농어촌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u></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행정구역상 읍·면지역</li> <li>②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li> <li>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li> </ul> </div> <p>다. 지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어린이집 규모(정원) 및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 지원</u></li> <li>* 정원충족률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익월 지원</li> </ul> <p>- 지원단가</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천원/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정원 구분</th> <th>60인 이하</th> <th>61~80인 이하</th> <th>81~100인 이하</th> <th>101~120인 이하</th> <th>121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60% 이하</td> <td>240</td> <td>250</td> <td>260</td> <td>270</td> <td>280</td> </tr> <tr> <td>61~80%</td> <td>220</td> <td>230</td> <td>240</td> <td>250</td> <td>260</td> </tr> <tr> <td>81~100%</td> <td>200</td> <td>210</td> <td>220</td> <td>230</td> <td>240</td> </tr> </tbody> </table> <p>- 시행시기 : '13년 1월부터 지원</p>	정원 구분	60인 이하	61~80인 이하	81~100인 이하	101~120인 이하	121인 이상	60% 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정원 구분	60인 이하	61~80인 이하	81~100인 이하	101~120인 이하	121인 이상																					
60% 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제 목	현 행	개 정
		라. 지원절차 ○ <u>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비 지원 신청</u> ○ <u>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비의 적정집행여부를 수시로 확인</u>
<b>XI. 부록(재무회계규칙)</b>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도 규정	<신 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어린이집은 별도 정하는 것으로 규정  <신 설>  <신 설>	가.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u>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서,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u> * 20인 이하 시설은 예산총칙 제외  나.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u>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세입·세출 결산서, 연도말 잔액 증명서(거래은행 발행), 결산서 보조서류,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퇴직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u> * 20인 이하 시설은 세출세출 결산 총괄 설명,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퇴직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 제외  ○ <u>제13조(추가경정예산)의 추가 경정세입예산서, 추가경정세출 예산서, 제16조(예산의 전용)의 과목전용조서, 제24조(장부의 종류)에서 정한 장부 외에 별도 관리가 필요한 보육료 대장, 제25조(수입금의 수납), 제29조</u>

제 목	현 행	개 정
		<p>(지출의 방법) 등에 의한 수입·지출 시 위임장,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예비비사용조서는 별도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기존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상의 양식과 동일)</p>
<p>2. 2013년도 주요 항목별 설명자료</p>	<p><b>[세입 항목]</b></p> <p>3. 보육료 수입</p> <p>○ 만0~4세아, 만5세아, 장애아, <u>다문화·맞벌이가구</u>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p> <p>4. 인건비보조금</p> <p>가. 적용범위</p> <p>-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1인당 100만원)</p> <p>6. 기타지원금</p> <p>나. 일반사항</p> <p>○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u>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u>, 건강검진비, 교사 보수교육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지원금</p> <p>8. 차입금</p> <p>나. 일반사항</p> <p>○ 일시 운영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p>	<p><b>[세입 항목]</b></p> <p>3. 보육료 수입</p> <p>○ 만0~5세아, 장애아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p> <p>4. 인건비 보조금</p> <p>가. 적용범위</p> <p>-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 &lt;삭제&gt;</p> <p>6. 기타지원금</p> <p>나. 일반사항</p> <p>○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u>공공형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 운영비</u>, 건강검진비, 교사 보수교육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지원금</p> <p>8. 차입금</p> <p>나. 일반사항</p> <p>○ 일시 운영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p>

제 목	현 행	개 정
	<p>으로 하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도 차입 가능</p> <p>[세출 항목] 2. 업무추진비 나. 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되, 보육교직원 수 및 지역별·어린이집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u> * 업무추진 기준액, 직책급 표</li> <li>○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u>업무추진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u></li> </ul> <p>4.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나. 일반사항 &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전신전화료는 휴대폰의 경우 어린이집별 어린이집 또는 원장 명의 1대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내 지출 가능</u> - <u>어린이집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이용료에 한하며, 지자체의 지도점검시 휴대폰 사용 내역 요구 및 확인 가능</u></li> </ul>	<p>으로 하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u>개인(단,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은 제외)</u>으로부터도 차입가능</p> <p>[세출 항목] 2. 업무추진비 나. 일반사항 &lt;삭 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u>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u></li> </ul> <p>4.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나. 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소모성 물품 구입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 사용</u></li> <li>○ <u>전신전화료는 휴대폰의 경우 어린이집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이용료에 한하며 지자체의 지도 점검 시 휴대폰 사용 내역 요구 및 확인 가능</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p>5. 기타 운영비</p> <p>나. 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략)</li> <li>○(생략)</li> <li>○(생략)</li> </ul> <p>&lt;신 설&gt;</p> <p>10. 전출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운영차입금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차입금은 당해연도 상환을 원칙으로 함</u></li> </ul> </li> </ul> <p>마. 예산의 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관·항간 전용 : (법인이사회 의결 거쳐) 전용가능</u></li> </ul> </li> </ul>	<p>5. 기타 운영비</p> <p>나. 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략)</li> <li>○(생략)</li> <li>○(생략)</li> </ul> <p>* 시설 개보수 등 지출 대상사업이 완성에 수년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정시점에서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적립한다 해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함.</p> <p>10. 전출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운영차입금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차입금은 당해연도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차입 자격, 규모, 용도 등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거쳐 상환 연장 가능</u></li> </ul> </li> </ul> <p>마. 예산의 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관·항간 전용 : (법인이사회 의결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전용가능</u></li> </ul> </li> </ul>
<b>XII. 서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서식 변경</u></li> <li>○ <u>서식 변경</u></li> <li>○ <u>서식 변경</u></li> <li>○ <u>서식 변경</u></li> <li>○ <u>서식 추가</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상위반편성 신청서(Ⅱ-1)</u></li> <li>○ <u>생활기록부(영아)(Ⅱ-2)</u></li> <li>○ <u>생활기록부(유아)(Ⅱ-3)</u></li> <li>○ <u>보육실습확인서(2006년)</u></li> <li>○ <u>보육실습확인서(2013.3.1 이후)</u></li> </ul>

제 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서식 추가</u></li> <li>○ <u>서식 변경</u></li> <li>○ <u>서식 변경</u></li> <li>○ <u>서식 변경</u></li> <li>○ <u>서식 변경</u></li> <li>○ <u>서식 추가</u></li> <li>○ <u>서식번호 변경</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보육실습평가서</u></li> <li>○ <u>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IX-1)</u></li> <li>○ <u>특수어린이집 지정서(IX-2)</u></li> <li>○ <u>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IX-3)</u></li> <li>○ <u>특수어린이집 지정서(IX-4)</u></li> <li>○ <u>시간연장보육신청서(IX-5-1)</u></li> <li>○ <u>24시간 어린이집 이용신청서(IX-5-2)</u></li> </ul>



## 2013 보육사업안내

---

---

인 쇄 : 2013년 3월

발 행 : 2013년 3월

발행처 : 보건복지부

인쇄처 : 이문인쇄(주)

☎ 02) 3672-0129

---

---